

#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을 중심으로\*

최 창 민\*\*

[ 目 次 ]

<b>I. 머리말</b>	5. 피고의 이익의 보호
<b>II.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현황</b>	6. 소결
<b>III. 베트남법에 따른 국제민사사법공조</b>	<b>V. 증거협약에 따른 국제민사사법공조</b>
1. 민사소송법	1. 목적과 적용범위
2. 민사판결집행법	2. 촉탁서에 의한 증거조사
3. 사법공조법	3. 외교관, 영사관원 및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
<b>IV. 송달협약에 따른 국제민사사법공조</b>	4. 간이한 증거조사
1. 목적과 적용범위	5. 소결
2.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	<b>VI. 한베조약에 관한 제언</b>
3. 외교관, 영사관원에 의한 송달	<b>VII. 맺음말</b>
4. 간이한 송달	

## I. 머리말

‘국제사법공조’는 넓게는 모든 국제적인 사법협력 또는 사법활동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의미하나, 주로 송달과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적인 사법협력을 의미한다.<sup>1)</sup> 특히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소장이나 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논문투고일: 2021. 5. 28. 심사개시일: 2021. 6. 11. 게재확정일: 2021. 6. 17.]

\* 논문을 읽고 귀중한 조언을 주신 석광현 교수님과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1)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사법(절차편), 박영사, 2012, 217면.

외국에 송달하고 외국에서 증거조사를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국가 간의 협조를 ‘국제민사사법공조’라 한다.<sup>2)</sup> 베트남 「사법공조법」<sup>3)</sup>은 사법공조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지만, 민사사법공조의 범위를 ① 민사사법공조와 관련된 문서, 서류, 자료의 송달, ② 증인과 전문가의 소환, ③ 증거의 수집과 제공, ④ 기타 민사사법공조 촉탁으로 규정한다(사법공조법 제10조).

우리나라와 베트남을 포함한 대륙법계에서 송달과 증거조사는 주권의 행사이므로 어느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에서 직접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주권침해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다른 국가의 사법기관의 협력을 통해야 한다.<sup>4)</sup> 따라서 국제민사사법공조는 대체로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다. 대표적인 다자조약으로는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sup>5)</sup>(이하 “헤이그회의”)가 성안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1965. 11. 15. 협약」<sup>6)</sup>(이하 “송달협약”)과 「민사 또는 상사

2) 양병희, “국제사법공조로서의 외국송달에 관한 소고”, 민사소송, 제3권(2002), 218면. 우리나라 「국제민사사법공조법」(제2조 제1호)은 사법공조를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 공무소등의 협조”로 정의한다.

3) 「사법공조법(Luật tương trợ tư pháp, 번호: 08/2007/QH12)」은 베트남 국회가 2007. 11. 21. 공포하여 2008. 1. 30. 발효하였다. 이 글에서 베트남법 조문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인용한다. 베트남법 조문을 번역할 때에는 가급적 송달협약, 증거협약 국문본이나 우리법의 상응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것이 여의치 않거나 달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주로 베트남어 어원인 한자를 직역하였고 일부는 의역하였다. 특히 사법공조법의 “ủy thác”과 송달협약, 증거협약의 “request”은 모두 “촉탁”으로 번역하였다. 참고로 송달협약 국문본은 “request”를 “요청”이라고 번역하고, 증거협약 국문본은 이를 “촉탁”이라고 번역한다.

4) 석광현, “헤이그증거협약 가입을 환영하며”, 법률신문(2010. 1. 1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38598> 참조.

5)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는 국제사법규범을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1893년에 소집되었고 1951년 제7차 회기에서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상설기구가 되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상설사무국을 두고 있다. 석광현, “한국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가입 2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거래와 법, 제19호(2017), 70면. 2021. 6. 현재 헤이그회의에는 88개 회원국(EU는 별도의 회원이다)이 있다. ASEAN 국가 중에는 말레이시아(2002. 10. 2. 가입), 필리핀(2010. 7. 14. 가입), 베트남(2013. 4. 10. 가입), 싱가포르(2014. 4. 9. 가입), 태국(2021. 3. 3. 가입)의 5개국이 헤이그회의 회원국이다. “HCCH Members”, 헤이그회의 웹사이트, <https://www.hcch.net/en/states/hcch-members> (2021. 6. 17. 방문) 참조.

6) 송달협약의 영문명은 「Convention of 15 November 1965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이다. 2020. 7. 27.

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1970. 3. 18. 협약<sup>7)</sup>(이하 “증거협약”)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7. 8. 20. 헤이그회의에 4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송달협약에는 2000. 1. 13. 가입(2000. 8. 1. 발효)하였으며, 증거협약에는 2009. 12. 14. 가입(2010. 2. 12. 발효)하였다.<sup>8)</sup> 한편 베트남 정부는 2012. 9. 17. 「헤이그회의 가입 의결<sup>9)</sup>」을 공포하고, 2012. 9. 28. 헤이그회의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베트남은 2013. 4. 10. 헤이그회의의 73번째 회원국이 되었다.<sup>10)</sup> 베트남 총리는 헤이그회의의 가입에 기하여 2013. 8. 16. 「베트남의

현재 송달협약의 체약국은 78개국이다. ASEAN 국가 중에는 베트남과 필리핀(2020. 3. 4. 가입, 2020. 10. 1. 발효)이 송달협약의 체약국이다. “Status Table”, 헤이그회의의 웹페이지,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17> (2021. 6. 17. 방문) 참조.

- 7) 증거협약의 영문명은 「Convention of 18 March 1970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이다. 2020. 3. 4. 현재 증거협약의 체약국은 63개국이다. ASEAN 국가 중에는 베트남과 싱가포르(1978. 10. 27. 가입, 1978. 12. 26. 발효)가 증거협약의 체약국이다. “Status Table”, 헤이그회의의 웹페이지,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82> (2021. 6. 17. 방문) 참조.
- 8) 우리나라는 송달협약과 증거협약 외에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1961. 10. 5. 협약(Convention of 5 October 1961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이하 “아포스티유협약”)과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1980. 10. 25. 협약(Convention of 25 October 1980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이하 “탈취협약”)에 가입하여, 현재 4개 헤이그회의의 협약의 당사국이다.
- 9) 베트남 정부가 2012. 9. 「헤이그회의의 가입 의결(Nghị quyết về việc gia nhập Hội nghị La Hay về tư pháp quốc tế, 번호: 58/NQ-CP)」을 공포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05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6차 ASEAN 법무장관회의는 “ASEAN 민상사사법공조 강화” 이니셔티브를 승인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베트남 법무부장관은 2008년 하노이에서 제4차 ASEAN 법률포럼을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ASEAN 국가뿐만 아니라 헤이그회의와 그 회원국(호주, 중국, 마카오, 홍콩 등)의 법률전문가들도 참석하였다. 포럼의 주된 내용은 ASEAN 국가의 헤이그회의의 협약 가입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이 포럼의 결과를 발판으로 삼아 베트남 총리는 법무부장관에게 베트남의 헤이그회의의 가입 가능성 연구를 지시하였다. 총리는 2012. 4. 연구 프로젝트 결과를 승인하였는데, 이는 베트남이 헤이그회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Bộ Tư pháp (Vụ Hợp tác quốc tế), “Hội nghị La Hay – cái nôi của nền tư pháp quốc tế: Việt Nam được chính thức công nhận là quốc gia thành viên từ ngày”, Trang thông tin điện tử Tương trợ tư pháp (2013. 4. 10.), <https://www.toaan.gov.vn/webcenter/portal/tttp/chi-tiet-dieu-uoc?dDocName=TOAAN009865> 참조.
- 10) 베트남 법무부 국제협력국 국장(Đặng Hoàng Oanh)은 2013. 3. 28. 기준 72개 헤이그회의의 회원국 중에 66개국이 베트남의 헤이그회의의 가입에 찬성 투표하였고, 나머지 6개국도 베트남을 지지하였지만 6개월 투표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계산에 포함

헤이그회의 회원국 권리의무 이행계획에 관한 결정」을 공포하였는데, 여기에는 베트남의 우선순위에 따라 헤이그회의 주요 협약에 점진적으로 가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sup>11)</sup> 이에 베트남은 2016. 3. 16. 네덜란드 외무부에 송달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였고, 송달협약은 베트남에서 2016. 10. 1. 발효하였다. 이어서 베트남은 2020. 3. 4. 증거협약에 가입하였고, 증거협약은 베트남에서 2020. 5. 3. 발효하였다.<sup>12)</sup>

베트남의 송달협약, 증거협약 가입은 국제통합에 관한 당과 국가의 기존 정책에 부합하였다.<sup>13)</sup> 베트남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정치부(이하 “정치

---

되지 않은 것이며, 베트남에 대한 66개국의 가입 지지는 헤이그회의 120년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Việt Nam được công nhận là thành viên chính thức Hội nghị La Hay”, Thư Viện Pháp Luật(2013. 4. 15.), <https://thuvienphapluat.vn/tintuc/vn/thoi-su-phap-luat/quoc-te/4494/viet-nam-duoc-cong-nhan-la-thanh-vien-chinh-thuc-hoi-nghi-la-hay> 참조.

11) 「베트남의 헤이그회의 회원국 권리의무 이행계획에 관한 결정(Quyết định về Kế hoạch thực hiện quyền và nghĩa vụ thành viên Hội nghị La Hay về tư pháp quốc tế của Việt Nam, 번호: 1440/QĐ-TTg)」은 베트남이 헤이그회의 회원국으로서 권리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표로서 ① 국제사법, 헤이그회의, 헤이그회의 협약에 관한 인식 제고, ② 국제사법 분야의 조직구조 강화 및 간부·전문가·변호사 역량 제고, ③ 헤이그회의 회원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 발휘, ④ 헤이그회의 협약 연구 및 점진적 가입 추진, ⑤ 국제사법에 관한 법률의 보완 연구 및 제안, ⑥ 헤이그회의 회원국 권리의무의 충분한 이행을 위한 적절한 재정능력 유지를 설정하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2) 베트남은 송달협약과 증거협약 외에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 5. 29. 협약(Convention of 29 May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에 2011. 11. 1. 가입(2012. 2. 1. 발효)하여, 현재 3개 헤이그회의 협약의 당사국이다. 한편 베트남 총리는 2018. 1. 11. 「2018-2021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1980년 헤이그협약 가입준비계획 비준에 관한 결정(Quyết định về phê duyệt Kế hoạch chuẩn bị gia nhập Công ước La Hay năm 1980 về khía cạnh dân sự của hành vi bắt cóc trẻ em quốc tế giai đoạn 2018-2021, 번호: 49/QĐ-TTg)」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1년까지 정부에 탈취협약 가입제안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탈취협약은 약식의 사실확인에 기초한 신속절차를 통하여 불법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고 어느 계약국의 법에 기한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다른 계약국에서 존중되도록 보장한다. 석광현,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한국의 가입”,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2호(2013), 81면. 한때 국제결혼의 증가에 수반하여 이혼과 아동탈취의 사례도 늘고 있어서, 베트남의 탈취협약 가입에 귀추가 주목된다.

13)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Vụ Hợp tác quốc tế), “Việt Nam chính thức nộp Văn kiện gia nhập Công ước La Hay về Tổng đạt giấy tờ”, Trang thông tin điện tử

부”)는 2005. 5. 24. 「2010년 베트남 법률체계 구축·완성 전략 및 2020년 방향에 관한 결의」<sup>14)</sup>에서 사법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통합 관련 법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법공조에 관한 다자조약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부의 2005. 6. 2. 「2020년 사법개혁 전략에 관한 결의」<sup>15)</sup>와 2013. 4. 10. 「국제통합에 관한 결의」<sup>16)</sup>는 베트남이 다른 국가와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우리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와 교역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sup>17)</sup> 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sup>18)</sup> 따라서 한베 사법공조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어 베트남이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이제 양국 사이에는 국제민사사법공조를 위한 법적 기초가 구축되었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이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에 가입하면서 선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제도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논의순서는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현황을 소개한다. 베트남은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사법공조를 실시하므로, III장에서는 베트남법에 따른 국제민사사법공조를 설명한다. 이어서 IV장은 송달협약에 따른 국제민사사법공조를, V장은 증거협약에 따른 국제민사사법공조를, 베트남이 각 협약에 가입하면서 선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VI장에서는 향후에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에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이 체결된다면 이에 규정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제언한다.

---

Tương trợ tư pháp(2018. 7. 26.),

<https://tttp.toaan.gov.vn/webcenter/portal/tttp/chi-tiet-tin?dDocName=TOAAN009995> 참조.

14) 「Nghị quyết về Chiến lược xây dựng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Việt Nam đến năm 2010, định hướng đến năm 2020 (번호: 48-NQ/TW)」

15) 「Nghị quyết về Chiến lược cải cách tư pháp đến năm 2020 (번호: 49-NQ/TW)」

16) 「Nghị quyết về hội nhập quốc tế (번호: 22-NQ/TW)」

17) 2020. 6. 기준으로 베트남은 한국의 4위 교역국, 3위 수출대상국, 4위 수입대상국으로서 직전 7년 동안 그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20. 8. 누계 기준으로 한국은 베트남의 1위 투자국이다. KOTRA, 2021 국별 진출전략 - 베트남, 2021, 86면 이하.

18) 우리나라의 2020년 국제결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아내 국적은 베트남(28.2%), 중국(22.7%), 태국(15.6%) 순이고 외국인 남편 국적은 미국(26%), 중국(22.2%), 베트남(11.8%) 순이다. “국제결혼 현황”, e-나라지표 웹페이지,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 (2021. 6. 17. 방문) 참조.

## II.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현황

현재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는 국내법(주로 사법공조법), 양자조약, 다자조약(송달협약 및 증거협약)의 틀에서 이행된다. 베트남 「조약법」<sup>19)</sup>(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조약은 국내법(헌법 제외)에 우선한다. 그러나 양자조약과 다자조약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선후관계가 없으며, 사법공조에 보다 우호적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20)</sup> 참고로 베트남 법무부(국제법률국)는 베트남에서 송달협약이 발효한 이후에 작성된 『민사사법공조 실행 가이드북』에서,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은 송달협약이나 양자조약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으나, 송달협약에 비하여 양자조약의 이행 평가가 우수하므로 양자조약상 경로의 선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sup>21)</sup>

베트남은 2021. 3. 17. 현재 62건의 사법공조 양자조약을 체결하였다.<sup>22)</sup> 이 중에서 일반조약이 13건(1건 효력정지),<sup>23)</sup> 민사사법공조조약이 6건,<sup>24)</sup>

19) 「조약법(Luật điều ước quốc tế, 번호: 108/2016/QH13)」은 베트남 정부가 2016. 4. 9. 공포하여 2016. 7. 1. 발효하였다.

20) 일반적으로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각 조약에 규정된 충돌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충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제3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 조약은 그 규정이 후 조약의 규정과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한다.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는 양자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아 사법공조에 더 우호적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석광현, “한중 사법공조의 실전현황과 개선방안”, 국제거래법연구, 제23권 제2호(2014), 322면. 다만 이와 달리 중국에는 양자조약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 다자조약인 송달협약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섭외민사·상사사건 사법문서 송달의 문제에 관한 약간의 규정)(제6조 제2항)이 있고, 중국학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관점에 동의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黃進, 曾濤, “중국과 한국간 사법공조의 현황 및 미래”, 국제사법연구, 제15호(2009), 23면.

21) Bộ Tư pháp (Vụ Pháp luật quốc tế), Sổ tay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tương trợ tư pháp trong lĩnh vực dân sự tại Việt Nam, 2018. 1., tr. 14.

22)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Công văn 33/TANDTC-HTQT năm 2021 về công tác tương trợ tư pháp, tổng đạt văn bản tố tụng ra nước ngoài, 2021. 3. 17., Bảng số 1.

23) 일반조약은 기본적으로 민사·형사사법공조를 다루고, 일부 일반조약은 가사, 노동분야의 사법공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베트남은 체코슬로바키아(1982. 10. 12. 서명, 1994. 4. 16. 발효), 쿠바(1984. 11. 30. 서명, 1987. 9. 19. 발효), 헝가리(1985. 1. 18. 서명, 1987. 7. 5. 발효되었으나, 2019. 3. 6. 신규 민사사법공조조약 발효로 인하여 효력정지), 불가리아(1986. 10. 3. 서명, 1987. 7. 5. 발효), 폴란드(1993. 3.

형사사법공조조약이 14건,<sup>25)</sup> 범죄인인도조약이 14건(2건 미발효),<sup>26)</sup> 수형자 이송조약이 15건(3건 미발효)<sup>27)</sup>이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에는 수형자

---

22. 서명, 1995. 1. 18. 발효), 라오스(1998. 7. 6. 서명, 2000. 2. 19. 발효), 러시아(1998. 8. 25. 서명, 2012. 8. 27. 발효), 중국(1998. 10. 19. 서명, 1999. 12. 25. 발효), 우크라이나(2000. 4. 6. 서명, 2002. 8. 19. 발효), 몽골(2000. 4. 17. 서명, 2002. 6. 13. 발효), 벨라루스(2000. 9. 14. 서명, 2001. 10. 18. 발효), 북한(2002. 5. 4. 서명, 2004. 2. 24. 발효), 러시아(추가외정서)(2003. 4. 23. 서명, 2012. 7. 27. 발효)와 일 반조약을 체결하였다.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註22), Bảng số 1.

24) 베트남은 프랑스(1999. 2. 24. 서명, 2001. 1. 5. 발효), 대만(2010. 4. 12. 서명, 2011. 12. 2. 발효), 알제리(2010. 4. 14. 서명, 2012. 6. 24. 발효), 카자흐스탄(2011. 10. 31. 서명, 2015. 6. 28. 발효), 캄보디아(2013. 1. 21. 서명, 2014. 10. 9. 발효), 헝가 리(2018. 9. 10. 서명, 2019. 3. 26. 발효)와 민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였다.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註22), Bảng số 1.

25) 베트남은 대한민국(2003. 9. 15. 서명, 2005. 4. 19. 발효), 인도(2007. 10. 8. 서명, 2008. 11. 17. 발효), 영국(2009. 1. 13. 서명, 2009. 9. 30. 발효), 알제리(2010. 4. 14. 서명, 2014. 3. 28. 발효), 인도네시아(2013. 6. 27. 서명, 2016. 1. 21. 발효), 호주(2014. 7. 2. 서명, 2017. 4. 5. 발효), 스페인(2015. 9. 18. 서명, 2017. 7. 8. 발효), 헝가리(2016. 3. 16. 서명, 2017. 6. 30. 발효), 프랑스(2016. 9. 6. 서명, 2020. 5. 1. 발효), 캄보디아(2016. 12. 20. 서명, 2020. 10. 2. 발효), 카자흐스탄(2017. 6. 15. 서명, 2019. 6. 1. 발효), 쿠바(2018. 3. 29. 서명, 2018. 9. 29. 발효), 모잠비크(2018. 12. 3. 서명, 2020. 9. 11. 발효), 라오스(2020. 1. 8. 서명, 2021. 2. 18. 발효)와 형사사법공 조조약을 체결하였다.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註22), Bảng số 1.

26) 베트남은 대한민국(2003. 9. 15. 서명, 2005. 4. 19. 발효), 알제리(2010. 4. 14. 서명, 2014. 3. 28. 발효), 인도(2011. 10. 12. 서명, 2013. 8. 12. 발효), 호주(2012. 4. 10. 서명, 2014. 4. 7. 발효), 인도네시아(2013. 6. 27. 서명, 2015. 4. 26. 발효), 헝가리(2013. 9. 16. 서명, 2017. 6. 30. 발효), 캄보디아(2013. 12. 23. 서명, 2014. 10. 9. 발효), 스페인(2014. 10. 1. 서명, 2017. 5. 1. 발효), 스리랑카(2014. 4. 7. 서명, 2017. 12. 1. 발효), 중국(2015. 4. 7. 서명, 2019. 12. 12. 발효), 프랑스(2016. 9. 6. 서명, 2020. 5. 1. 발효), 카자흐스탄(2017. 6. 15. 서명, 2019. 11. 15. 발효), 몽골(2019. 7. 10. 서명, 미발효), 모잠비크(2019. 12. 9. 서명, 미발효)와 범죄인인도조약 을 체결하였다.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註22), Bảng số 1.

27) 베트남은 영국(2008. 9. 12. 서명, 2009. 9. 20. 발효), 대한민국(2009. 5. 29. 서명, 2010. 8. 30. 발효), 호주(2009. 10. 13. 서명, 2009. 12. 11. 발효), 태국(2010. 3. 3. 서명, 2010. 7. 19. 발효), 헝가리(2013. 9. 16. 서명, 2017. 6. 30. 발효), 러시아(2013. 11. 12. 서명, 2017. 5. 15. 발효), 인도(2013. 11. 1. 서명, 2020. 12. 1. 발효), 스리랑카(2014. 4. 7. 서명, 2017. 5. 16. 발효), 스페인(2014. 10. 1. 서명, 2017. 5. 1. 발효), 캄보디아(2016. 12. 20. 서명, 2020. 10. 1. 발효), 체코(2017. 6. 7. 서명, 2019. 7. 2. 발효), 몽골(2018. 10. 16. 서명, 미발효), 일본(2019. 7. 1. 서명, 2020. 8. 19. 발효), 모잠비크(2019. 12. 9. 서명, 미발효), 라오스(2020. 1. 4. 서명, 미발효)와 수형자이송조약을 체결하였다.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註22), Bảng số 1.

이송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었다. 양국은 민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 협상도 진행하였지만, 이는 성사되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사법공조법이 공포되기 전까지 연간 사법공조촉탁건수는 수백 건에 불과했으나, 그 숫자는 베트남의 국제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증가하였다.<sup>28)</sup> 사법공조법이 발효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베트남이 외국으로 보낸 민사사법공조 촉탁서류는 총 14,482건이었다. 이 중에서 13,613건(91.7%)은 베트남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보내졌고, 양자조약 체결국으로 보낸 서류는 1,229건(8.3%)에 불과했다. 일부 양자조약 체결국(몽골, 북한, 쿠바, 불가리아, 알제리)으로부터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촉탁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베트남은 대규모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미국,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등과 양자조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체약국인 송달협약에 조속히 가입할 필요가 있었다.<sup>29)</sup>

베트남의 송달협약 가입을 전후한 3년 동안 베트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 건의 『사법공조활동 보고』<sup>30)</sup>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베트남의 민사사법공조 촉탁 및 집행의 추이는 아래의 표와 같았다.

28) “Vietnam seeks to join Hague Service Convention next year”, Vietnam Law and Legal Forum magazine(2014. 10. 23.), <https://vietnamlawmagazine.vn/vietnam-seeks-to-join-hague-service-convention-next-year-3687.html> 참조.

29) 베트남 법무부 국제법률국 부국장(Phạm Hồ Hương)은 베트남 당국이 민사사법공조 수요가 높은 국가들(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과 양자조약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상을 제안했지만, 이러한 국가들은 송달협약과 같은 다자조약에 이미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Việt Nam tham gia Công ước La Hay năm 1965 về Tổng đạt: Cơ hội và thách thức”, Đài Phát thanh - Truyền hình và Báo Bình Phước(2014. 12. 10.), <https://baobinhphuoc.com.vn/news/1/2582/viet-nam-tham-gia-cong-uc-la-hay-nam-1965-ve-tong-dat-co-hoi-va-thach-thuc> 참조.

30) Chính phủ, Báo cáo số 429/BC-CP về hoạt động tương trợ tư pháp năm 2016, 2016. 10. 17., tr. 6-7. 이하 “2016년 보고서”로 인용한다. Chính phủ, Báo cáo số 427/BC-CP về hoạt động tương trợ tư pháp năm 2017, 2017. 10. 12., tr. 6-7. 이하 “2017년 보고서”로 인용한다. Chính phủ, Báo cáo số 465/BC-CP về hoạt động tương trợ tư pháp năm 2018, 2018. 10. 10., tr. 7-8. 이하 “2018년 보고서”로 인용한다. 사법공조법(제61조 제3항)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국회에 매년 사법공조활동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매년 10월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웹사이트에는 2018년 보고서까지 공개되어 있다.

	2016년 (2015.10.1.~2016.9.30.)	2017년 (2016.10.1.~2017.9.30.)	2018년 (2017.10.1.~2018.9.30.)
<b>베트남이 외국으로 한 민사사법공조촉탁 [집행건수 / 촉탁건수 (집행률)]</b>			
전체	1890 / 3338 (57%)	855 / 1861 (46%)	1158 / 2069 (56%)
조약 미체결국	- / 2722	583 / 1122 (52%)	11 / 94 (12%)
양자조약 체결국	- / 616	264 / 521 (51%)	411 / 684 (64%)
송달협약 체결국	-	8 / 218 (4%)	736 / 1291 (57%)
<b>외국이 베트남으로 한 민사사법공조촉탁 [집행건수 / 촉탁건수 (집행률)]</b>			
전체	284 / 666 (43%)	493 / 753 (65%)	580 / 989 (59%)
조약 미체결국	31 / 85 (31%)	47 / 51 (92%)	8 / 9 (89%)
양자조약 체결국	253 / 581 (44%)	345 / 616 (56%)	445 / 770 (58%)
송달협약 체결국	-	47 / 86 (55%)	127 / 210 (60%)

베트남에서 송달협약은 2016. 10. 1. 발효하였지만, 베트남 당국이 송달협약에 따라 촉탁을 실시한 것은 2017년 하반기부터이다. 따라서 2017년 보고서상 베트남이 송달협약 체결국으로 한 촉탁건수와 그 집행률은 낮게 집계되었다.<sup>31)</sup> 베트남 당국이 송달협약에 따른 촉탁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이후에 작성된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직전 연도에 비하여 외국으로의 촉탁건수는 11% 증가했고 그 집행률은 10% 증가했다. 집행기간도 많이 단축되어, 특히 송달협약을 통한 외국으로의 촉탁의 평균 송달기간은 2~4개월이었고,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의 평균 집행기간은 3~5개월이었다.<sup>32)</sup> 3개년 보고서 모두 베트남이 민사사법공조촉탁을 가장 많이 송부한 국가는 미국, 대만,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의 5개국이라고 하였다.<sup>33)</sup> 베트남 법무부는 송달협약을 이행한 결과, 이러한 국가(양자조약이 체결된 대만 제외)와의 사법공조가 더욱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sup>34)</sup>

2008년 이전에는 수백 건,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2,000건이었던 베트남의 평균 연간 사법공조촉탁건수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4,000건 이

31) 2017년 보고서(註30), tr. 6.

32) 2018년 보고서(註30), tr. 7.

33) 2016년 보고서(註30), tr. 6, 2017년 보고서(註30), tr. 6, 2018년 보고서(註30), tr. 7.

34) 2018년 보고서(註30), tr. 11.

상으로 상승하였다.<sup>35)</sup> 베트남의 사법공조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III. 베트남법에 따른 국제민사사법공조

#### 1. 민사소송법

베트남 「민사소송법」<sup>36)</sup>은 ‘제8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 해결절차’ 하의 ‘제38장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 해결절차의 일반조항’<sup>37)</sup>에서 민사소송 사법공조 적용원칙(제464조 제3항),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소송문서 송달방식(제474조), 외국에 있는 증거수집(제475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3항에 따르면, 민사소송 중의 사법공조활동은 사법공조법에 따라 이행한다.

베트남 법원은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소송문서를 송달할 때 아래의 방식을 따른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제1항). 아래에서 ①, ② 방식은 사법공조법에 따라 이행한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제2항).

35) “Thu thập chứng cứ ở nước ngoài trong lĩnh vực dân sự, thương mại của Việt Nam”, Tạp chí Công Thương(2020. 7. 2.), <https://tapchicongthuong.vn/bai-viet/thu-thap-chung-cu-o-nuoc-ngoai-trong-linh-vuc-dan-su-thuong-mai-cua-viet-nam-73068.htm> 참조. “Bộ Tư pháp: Mỗi năm tiếp nhận hơn 4.000 yêu cầu về tương trợ tư pháp”, Báo điện tử Chính phủ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2020. 6. 23.), <http://baochinhphu.vn/Phap-luat/Bo-Tu-phap-Moi-nam-tiep-nhan-hon-4000-yeu-cau-ve-tuong-tro-tu-phap/398676.vgp> 참조.

36) 「민사소송법(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번호: 92/2015/QH13)」은 베트남 국회가 2015. 11. 25. 공포하여 2016. 7. 1. 발효하였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JICA의 법률기술지원사업을 통하여 베트남의 민사 및 경제 분야 입법지원을 하였는데, 베트남의 2004년 민사소송법(번호: 24/2004/QH11)과 현행 2015년 민사소송법의 성안은 일본의 지원을 받았다. 이준현,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 활동과 일본 -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6권 1호(2008), 211면 이하 참조. “The Project for Harmonized, Practical Legislation and Uniform Application of Law Targeting Year 2020 (PHAP LUAT 2020)”, JICA 웹페이지, <https://www.jica.go.jp/project/english/vietnam/032/outline/index.html> (2021. 5. 14. 방문) 참조.

37) 민사소송법 ‘제8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 해결절차’는 ‘제38장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 해결절차의 일반조항’의 단일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베트남이 체약국인 조약에 규정된 송달방식
- ② 외국과 베트남이 조약의 체약국이 아닌 경우, 외국 거주 당사자에 대한 외교 경로를 통한 송달
- ③ 외국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외국 거주 당사자 주소에 대한 우편경로를 통한 송달
- ④ 베트남 재외국민인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베트남 재외공관<sup>38)</sup>에 대한 우편경로를 통한 송달<sup>39)</sup>
- ⑤ 베트남에 외국 기관·단체의 대표사무소나 지점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대표사무소나 지점을 통한 송달
- ⑥ 베트남에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에 대한 우편경로를 통한 송달

위의 송달방식이 실패한 경우에, 법원은 베트남 재외공관, 수소법원 또는 베트남 내 당사자 최종 거주지에서 1개월 동안 공시하고, 법원 웹사이트(있는 경우)와 베트남 재외공관 웹사이트에서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 방송의 외국인 채널을 통하여 3일 연속으로 통보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제3항).

베트남 법원은 외국에 있는 증거수집 역시 상기한 ①, ② 방식에 따라 이행한다(민사소송법 제475조 제1항). 다만 베트남 재외국민인 당사자에 대해서는 베트남 법원에 문서, 자료, 증거를 송부할 것을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5조 제2항).

38) 「베트남 재외공관법(Luật Cơ quan đại diện Việt Nam ở nước ngoài, 번호: 33/2009/QH12)」(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베트남 재외공관은 대사관, 영사관, 대표부이다.

39) 베트남 재외국민에 대한 송달 절차는 최고인민법원과 외교부가 2019. 12. 5. 공포하여 2020. 2. 3. 발효한 「외국에서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활동 이행을 위한 최고인민법원과 베트남 재외공관 간의 협력 절차에 관한 합동시행규칙(Thông tư liên tịch quy định về trình tự, thủ tục phối hợp giữa Tòa án nhân dân và Cơ quan đại diện nước Việt Nam ở nước ngoài để thực hiện hoạt động tố tụng dân sự và tố tụng hành chính ở nước ngoài, 번호: 01/2019/TTLT-TANDTC-BNG)」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2. 민사판결집행법

베트남 「민사판결집행법」<sup>40)</sup>은 ‘제9장 시행조항’에서 판결집행의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원칙적인 조항(제181조)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민사판결집행에 관한 외국으로의 촉탁과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은 사법공조법에 따라 이행한다(민사판결집행법 제181조 제1항). 외국에 판결집행의 민사사법공조를 촉탁하는 민사판결집행기관은 사법공조법에 따라 사법촉탁서류를 작성해야 한다(제181조 제2항).

「민사판결집행법 시행령」<sup>41)</sup> 제50조는 판결집행 민사사법공조의 관할기관과 절차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다. 성급민사판결집행기관은 판결·결정의 집행 과정에서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법공조를 촉탁할 수 있다(민사판결집행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문). 군급민사판결집행기관은 사법공조촉탁이 필요한 경우에 사법촉탁서류를 작성하여 성급민사판결집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민사판결집행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문). 사법공조촉탁 절차는 베트남이 당사국인 조약과 사법공조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민사판결집행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민사판결집행법 시행령(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판결집행에 사법촉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40) 「민사판결집행법(Luật thi hành án dân sự, 번호: 26/2008/QH12)」은 베트남 국회가 2008. 7. 1. 공포하여 2009. 7. 1. 발효하였고, 「민사판결집행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충하는 법률(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i hành án dân sự, 번호: 64/2014/QH13)」은 베트남 국회가 2014. 11. 25. 공포하여 2015. 7. 1. 발효하였다.

41) 「민사판결집행법 시행령(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i hành án dân sự, 62/2015/NĐ-CP)」은 베트남 정부가 2015. 7. 18. 공포하여 2015. 9. 1. 발효하였고, 「민사판결집행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충하는 시행령(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62/2015/NĐ-CP ngày 18 tháng 7 năm 201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i hành án dân sự, 번호: 33/2020/NĐ-CP)」은 베트남 정부가 2020. 3. 17. 공포하여 2020. 5. 1. 발효하였다.

- ① 법무부가 유효한 사법촉탁서류를 송부하고 필요에 따른 충분한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민사판결집행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을 집행한다. 사법촉탁 결과를 받았으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민사판결집행기관은 두 번째 사법촉탁을 한다. 두 번째 사법촉탁 결과도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민사판결집행기관은 동 조항 제b호를 따른다(이상 민사판결집행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a호).
- ② 동 조항 제a호에 규정된 기간이 결과 없이 만료되거나 사법촉탁 집행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촉탁한 문서와 판결집행 과정상 기타 문서의 통보는 민사판결집행법 제43조(일간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2일 연속으로 통보)에 따라 실행한다(민사판결집행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b호).
- ③ 당사자의 재산, 신원과 관련된 문서, 자료를 돌려보내는 사법촉탁의 경우에 사법촉탁 결과가 없거나 당사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면, 동 조항 제a호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되거나 통보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판결집행기관은 이를 당사자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수신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 자료를 발행한 기관, 단체 또는 문서, 자료를 발행한 기관, 단체가 소재한 국가의 대표기관에 이를 송부한다(이상 민사판결집행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c호).

성급민사판결집행기관은 민사판결집행에 관한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사법공조촉탁을 접수하고 처리할 권한이 있다(민사판결집행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a호).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민사판결집행에 관한 사법공조촉탁의 집행절차는 베트남이 당사국인 조약, 사법공조법, 민사판결집행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민사판결집행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b호).

다만 베트남 법무부 민사판결집행총국은 민사판결집행의 사법공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민사판결집행 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규정이 미흡하고, 민사판결집행 사법공조의 실질적 범위가 문서의 송달로 제한되며, 민사판결집행기관의 사법촉탁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부재하다. 또한 실무적인 측면에서 민사판결집행기관이 사법촉탁서류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사법촉탁 집행기간이 길지만 그 결과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으며, 가령 외국인이 복역을 완료하였으나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직업을 구하여 수입을 얻기가 어려운 등 기타 다양한 실무상 문제가 있다.<sup>42)</sup>

42) “Tương trợ Tư pháp trong Thi hành án dân sự: Vương mắc, bất cập và đề xuất hư

### 3. 사법공조법

베트남에서 사법공조법이 발효한 이후에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는 동법에 따라 처리되었다. 사법공조법의 하위 법령으로는 「사법공조법 시행령」<sup>43)</sup>과 법무부, 외교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사법공조 절차에 관한 합동시행규칙」(이하 “합동시행규칙”)<sup>44)</sup>이 있다. 이 중에서 합동시행규칙은 베트남이 송달협약에 가입한 이후에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합동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사법공조법은 각 장에서 민사사법공조(제Ⅱ장), 형사사법공조(제Ⅲ장), 인도(제Ⅳ장), 수행자이송(제Ⅴ장)을 다룬다. 특히 사법공조법은 민사사법공조의 범위를 ① 민사사법공조와 관련된 문서, 서류, 자료의 송달,<sup>45)</sup> ② 증인과 전문가의 소환, ③ 증거의 수집과 제공, ④ 기타 민사사법공조 촉탁<sup>46)</sup>

ông giải quyết”,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Tổng cục Thi hành án dân sự - Bộ Tư pháp(2019. 12. 11.), [https://thads.moj.gov.vn/noidung/tintuc/lists/nghiencuutraodoi/view\\_detail.aspx?itemid=934](https://thads.moj.gov.vn/noidung/tintuc/lists/nghiencuutraodoi/view_detail.aspx?itemid=934) 참조.

43) 「사법공조법 시행령(Nghị định hướng dẫn Luật Tương trợ tư pháp, 번호: 92/2008/NĐ-CP)」은 베트남 정부가 2008. 8. 22. 공포하여 2008. 9. 23. 발효하였다.

44) 합동시행규칙(Thông tư liên tịch quy định về trình tự, thủ tục tương trợ tư pháp trong lĩnh vực dân sự, 번호: 12/2016/TTLT-BTP-BNG-TANDTC)은 법무부, 외교부, 최고인민법원이 2016. 10. 19. 공포하여 2016. 12. 6. 발효하였다.

45) 우리나라 국제민사사법공조법(제2조 제1호)은 사법공조의 정의에 “재판상 서류의 송달”만을 포함하므로, 재판외 문서의 송달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상 사법공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박영사, 2001, 313면. 이에 반하여 베트남 사법공조법(제10조)은 민사사법공조의 범위에 “민사사법공조와 관련된 문서, 서류, 자료의 송달”을 포함하므로, 재판외 문서의 송달도 사법공조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베트남 법률은 ‘재판외 문서’와 그 송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46) 가령 「베트남 해사법(Bộ luật hàng hải Việt Nam, 번호: 95/2015/QH13)」(2015. 11. 25. 공포, 2017. 7. 1. 발효, 이후 법률 제35/2018/QH14호로 일부 개정) 제138조 제2항에 따르면 사법공조 집행을 위한 임시긴급조치로서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또한 「과산법(Luật Phá sản, 번호: 51/2014/QH13)」(2014. 6. 19. 공포, 2015. 1. 1. 발효) 제118조에 따르면 외국법원 과산선고결정의 승인 및 집행은 베트남이 당사국인 사법공조조약이나 사법공조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국제협력국 부국장(Lê Mạnh Hùng)은 과산법 제118조가 사법공조 이론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사법공조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형사 소송의 진행을 지원하는 국제협력활동인데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은 소송이 종료되고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증거이므로, 외국법원 민사판결·결정의 승인 및 집행은 민사사법공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Lê Mạnh Hùng, “Công nhận và cho thi

으로 규정한다(사법공조법 제10조).

### 가. 민사사법촉탁서류

사법공조법은 ‘민사사법촉탁서류(hồ sơ ủy thác tư pháp về dân sự)’에 관하여 규정한다. 베트남이 외국으로 하는 촉탁뿐만 아니라, 외국이 베트남으로 하는 촉탁 역시 사법공조법상 민사사법촉탁서류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사법공조법 제13조 제2항). 민사사법촉탁서류는 아래의 문서로 구성된다(사법공조법 제11조 제1항).

- ① 민사사법공조를 촉탁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문서<sup>47)</sup>
- ② 민사사법촉탁서<sup>48)</sup>
- ③ 수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기타 문서

이 중에서 ②번 문서인 ‘민사사법촉탁서(văn bản ủy thác tư pháp về dân sự)’는 문서 작성 연월일과 장소, 촉탁당국의 이름과 주소, 수탁당국의 이름과 주소, 사법촉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기관·단체의 이름과 주소, 사법촉탁 업무의 내용(목적, 사실관계, 적용법률, 집행방법, 집행기간)을 명시해야 한다(사법공조법 제12조).

사법공조의 언어는 베트남과 외국 사이에 조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조약이 없으면 수탁국의 언어나 수탁국이 촉탁서를 접수하는 기타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서류에 첨부해야 한다(사법공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sup>49)</sup>

---

hành tại Việt Nam quyết định giải quyết việc phá sản của Tòa án nước ngoài - Một số vấn đề pháp lý đặt ra”, Tạp chí Tòa án nhân dân điện tử(2021. 3. 6.), <https://tapchitoaan.vn/bai-viet/nghien-cuu/cong-nhan-va-cho-thi-hanh-tai-viet-nam-quyet-dinh-giai-quyet-vec-pha-san-cua-toa-an-nuoc-ngoi-%E2%80%93mot-so-van-de-phap-ly-dat-ra> 참조.

47) 합동시행규칙 01번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합동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a호).

48) 합동시행규칙 02A번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송달협약상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의 촉탁서는 합동시행규칙 02B번 양식(송달협약에 부속된 촉탁서 양식과 동일)에 따라 작성한다(이상 합동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b호).

49) 다만 사법촉탁서류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가령 번역의 표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번역이 수탁국의 법률용어와 일치

나. 베트남이 외국으로 하는 민사사법공조촉탁 절차

베트남이 외국으로 하는 민사사법공조촉탁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사법공조법 제14조).

- ①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sup>50)</sup>은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민사사법공조를 촉탁하기 위하여 민사사법촉탁서류를 작성하고 법무부에 송부한다(사법공조법 제14조 제1항).
- ② 법무부는 민사사법촉탁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0근무일 내에 사법촉탁을 기록하고 서류의 유효성을 검토한 후,<sup>51)</sup> 이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송달한다(사법공조법 제14조 제2항 제1문, 합동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 베트남과 외국 간의 조약에 따라 주요송달경로<sup>52)</sup>나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류를 전달
- ㉡ 베트남과 외국 간에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외교경로를 통한 송달을 위하여 외교부에 서류를 전달
- ㉢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안하거나 주요송달경로를 통해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간접외교경로 또는 간접영사경로를 통해 서류를 송달<sup>53)</sup>
- ③ 법무부는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사법촉탁 집행결과 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근무일 내에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한다(사법공조법 제14조 제3항).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Quy trình thực hiện tương trợ tư pháp về dân sự thực tiễn áp dụng và những bất cập”, Trường Đại học Kiểm sát Hà Nội, <https://tks.edu.vn/thong-tin-khoa-hoc/chi-tiet/81/560> (2021. 6. 17.) 방문.

50) 외국에 민사사법공조촉탁을 하는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은 최고인민법원, 고등인민법원, 성급인민법원, 성급민사판결집행기관, 최고인민검찰원, 고등인민검찰원, 성급인민검찰원,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을 의미한다(합동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군급 인민법원·인민검찰원·민사판결집행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민사사법촉탁서류를 작성하여 성급 당국으로 송부한다(합동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51) 서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부가 이유를 명시하여 서류 작성기관에 반송한다(사법공조법 제14조 제2항 제2문).

52) ‘주요송달경로(kênh tổng đạt chính)’는 송달협약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국의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방식을 의미한다(합동시행규칙 제3조 제6항).

53) ‘간접외교경로(kênh ngoại giao gián tiếp)’는 송달협약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국의 외교관이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한 송달방식을 의미한다(합동시행규칙 제3조 제8항). ‘간접영사경로(kênh lãnh sự gián tiếp)’는 송달협약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국의 영사관원이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한 송달방식을 의미한다(합

베트남과 외국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민사사법촉탁서류의 송달은 외교경로(②-④)를 통하여 실시된다. 외교부는 법무부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내에 베트남 재외공관에 서류를 전달하고, 베트남 재외공관은 외교부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내에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류를 전달한다(합동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집행결과 역시 역으로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 — 베트남 재외공관 — 베트남 외교부 — 베트남 법무부 —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의 순으로 통보되며 각 단계마다 마찬가지로 5근무일이 소요된다(합동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 다. 외국이 베트남으로 하는 민사사법공조촉탁 절차

외국이 베트남으로 하는 민사사법공조촉탁의 접수와 처리는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사법공조법 제15조).

- ① 법무부<sup>54)</sup>는 촉탁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민사사법촉탁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0근무일 내에 사법촉탁을 기록하고 서류의 유효성을 검토한 후,<sup>55)</sup> 이를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sup>56)</sup>에 전달한다(사법공조법 제15조 제1항 제1문).
- ②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은 외국의 민사사법촉탁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7근무일 내에 사법촉탁을 기록하고 아래의 업무를 이행한다(합동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㉗ 사안이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사법촉탁 집행을 위하여 접수

동시행규칙 제3조 제7항). 한편 송달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촉탁국의 외교관이나 영사관원에 의한 수신인에 대한 송달방식은 ‘직접외교·영사경로(kênh ngoại giao, lãnh sự trực tiếp)’라고 부른다(합동시행규칙 제3조 제9항).

54) 외교부는 외국의 사법촉탁서류를 수령한 경우에 수령일로부터 5근무일 내에 법무부로 서류와 첨부자료를 전달한다(합동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문).

55) 서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부가 이유를 명시하여 촉탁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반송한다(사법공조법 제15조 제1항 제2문).

56) 외국의 민사사법촉탁을 집행하는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은 성급인민법원, 성급민사판결집행기관, 집행관(thừa phát lại)이다(합동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57) 이러한 기한 내에 사법촉탁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무부에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한다(합동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3문). 법무부는 이를 촉탁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사법공조법 제15조 제3항).

58) 합동시행규칙 03번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합동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㉔ 사안이 자신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에 서류를 반송
- ㉕ 관련 정보·자료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촉탁의 집행에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5근무일 내에 촉탁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정보·자료의 보완이나 실비의 납부를 위하여 통보
- ③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베트남이 체약국인 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한 기간 내에 사법촉탁을 집행한다(합동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1문).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집행기간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무부로부터 민사사법촉탁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사법촉탁을 집행한다(합동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2문).<sup>57)</sup>
- ④ 법무부는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사법촉탁 집행결과 통보서<sup>58)</sup>를 수령한 날로부터 5근무일 내에 이를 조약에 따라 촉탁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하거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전달한다(사법공조법 제15조 제2항).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은 외국의 사법촉탁을 집행하기 위하여 ① 국내 사건처럼 민사소송법과 민사판결집행법을 적용하거나, ②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한 특별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합동시행규칙 제2조).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외국법에 따른 특별한 방식의 적용을 요청한 경우, 외국법의 적용은 베트남이 체약국인 조약에 따라서만 이행될 수 있으며(사법공조법 제4조 제2항),<sup>59)</sup> 외국법 적용의 결과는 베트남법의 기본원칙<sup>60)</sup>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합동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c호).

#### 라. 사법공조법의 한계

사법공조법은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국내법이다. 따라서 베트남과

59) 법무부는 최고인민법원, 외교부와 협력하여 외국법의 적용에 관하여 검토하고 결정한다(합동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문).

60)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베트남 「민법(Bộ luật dân sự, 번호: 91/2015/QH13)」과 「상법(Luật Thương mại, 번호: 36/2005/QH11)」의 기본원칙을 참조할 수 있다. 민법(제3조)은 평등의 원칙, 계약자유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공익 보호의 원칙, 채무불이행책임의 원칙을 민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제10조 내지 제15조)은 상인 평등의 원칙, 계약자유 원칙, 관례 적용의 원칙, 관행 적용의 원칙, 소비자 보호의 원칙, 데이터 메시지 효력 인정의 원칙을 상사행위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사법공조법이 적용된다면, 외국이 베트남에 사법촉탁을 할 때 반드시 동법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법에 따라 사법촉탁을 하더라도 베트남이 그에 따를 국제법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베트남 국내법인 사법공조법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sup>61)</sup>

사법공조법은 2008년 발효한 이후에 십여 년 동안 개정 없이 베트남 사법공조의 법적 기초로 기능하였다. 사법공조법은 민사사법공조, 형사사법공조, 인도, 수형자이송의 네 가지 영역을 하나의 법률에서 모두 규정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범죄인인도법」, 「국제수형자이송법」의 개별적인 법률을 제정한 것과 다른 점이다. 베트남 법무부는 이러한 영역이 각기 특수하고 그 성격과 절차가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2018. 1. 5. 총리에게 사법공조법의 개정을 건의하였고, 총리는 2018. 1. 30. 사법공조법을 민사사법공조, 형사사법공조, 인도, 수형자이송에 관한 별개의 법률로 분리하여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sup>62)</sup>

베트남 법무부 국제협력국 부국장(Mai Thế Bày)은 과거에 민사사법공조와 관련된 사법공조법의 운용상 한계로 ① 지방법원의 전담인력 부재, 교통수단 부족, 소환비용 미처벌 등으로 인하여 촉탁의 집행이 지연된다는 점, ② 일부 법원은 촉탁집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촉탁집행 관련 서류를 송부하지 않거나 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작성한다는 점, ③ 민사판결집행법이 사법공조에 관하여 매우 일반적인 규정만 두고 있어서 적용이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sup>63)</sup> 법무부는 사법공조법이 제정된 이래 민사 분야의 사법공조촉탁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하면서 절차를 개혁·단축할 필요가 커졌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민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함으로써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sup>64)</sup>

61) 외국이 베트남에 사법촉탁을 할 때 사법공조법에 따르지 않는다면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외국이 동법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효과는 있다. 외국이 사법공조법에 따라 사법촉탁을 한다면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국내법상 그에 따를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다. 석광현(註1), 221면 참조.

62) “Cần hoàn thiện khung pháp lý về tương trợ tư pháp hình sự”, Báo vệ pháp luật (2019. 9. 10.), <https://baovephapluat.vn/kiem-sat-24h/ban-tin-kiem-sat/can-hoan-thien-khung-phap-ly-ve-tuong-tro-tu-phap-hinh-su-75405.html> 참조.

63) “Tương trợ tư pháp: “trống” nhiều quy định”, Báo Nhân Dân điện tử(2012. 8. 24.), <https://nhandan.vn/thoi-su-phap-luat/tuong-tro-tu-phap-trong-nhieu-quy-dinh-582497> 참조.

64) “Bộ Tư pháp đề xuất xây dựng Luật tương trợ tư pháp trong lĩnh vực dân sự”, Báo

애초에 사법공조법 개정은 베트남 국회의 2021년 법률·법령 구축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1년 프로그램<sup>65)</sup>뿐만 아니라 최근 국회상무위원회가 검토한 2022년 프로그램<sup>66)</sup>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보면, 사법공조법의 개정 준비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 IV. 송달협약에 따른 국제민사사법공조

베트남 대통령<sup>67)</sup>은 2015. 12. 8. 「송달협약 가입 결정」<sup>68)</sup>을 공포하였다.

---

Lao Đông(2019. 11. 15.), <https://laodong.vn/thoi-su/bo-tu-phap-de-xuat-xay-dung-luat-tuong-tro-tu-phap-trong-linh-vuc-dan-su-766254.ldo> 참조.

65) 베트남 국회는 2020. 6. 10. 「2021년 법률·법령 구축 프로그램, 2020년 법률·법령 구축 프로그램 개정 결의(Nghị quyết Chương trình xây dựng luật, pháp lệnh năm 2021, điều chỉnh Chương trình xây dựng luật, pháp lệnh năm 2020, 번호: 106/2020/QH14)」를 공포하였으나, 여기에 사법공조법 개정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66) “UBTVQH cho ý kiến về chương trình xây dựng luật, pháp lệnh”, Báo điện tử Chính phủ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2021. 6. 14.), <http://baochinhphu.vn/Hoat-dong-Bo-nganh/UBTVQH-cho-y-kien-ve-chuong-trinh-xay-dung-luat-phap-lenh/434689.vgp> 참조.

67) 베트남 국회상무위원회는 송달협약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가입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헌법 제70조 제14항, 조약법 제29조 및 제43조). “Ủy ban Thường vụ Quốc hội cho ý kiến về việc gia nhập Công ước La Hay”,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Quốc Hội(2015. 10. 13.), <http://quochoi.vn/uybandoingoi/lapphap/Pages/home.aspx?ItemID=112> 참조.

68) 베트남 조약법에 따르면, 국회, 대통령, 정부는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결정을 할 때 그 조약의 내용, 성격과 필요성에 근거하여 ① 조약의 규정이 그 이행을 위하여 충분히 명료하고 구체적이라면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직접 적용을 결정하거나, ②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법률규범문서(국회의 법률·의결 또는 국회상무위원회의 법령·의결 수준)의 개정, 보충, 폐지, 제정을 결정하거나 제안해야 한다(조약법 제6조 제2항, 제29조 제3항 제c호, 제43조 제4항). 베트남 대통령은 이러한 조약법 조항에 근거하여 「송달협약 가입 결정(Quyết định về việc gia nhập Công ước La Hay năm 1965 về tổng đạt ra nước ngoài giấy tờ tư pháp và ngoài tư pháp trong lĩnh vực dân sự hoặc thương mại, 번호: 2731/2015/QĐ-CTN)」을 공포한 것이다. 이 결정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베트남이 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국회나 국회상무위원회가 별도의 송달협약 이행법률을 제정하지는 않았으므로, 결정문에는 송달협약의 직접 적용을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베트남 정부는 2016. 3. 16. 네덜란드 외교부에 송달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였고, 송달협약은 베트남에서 2016. 10. 1. 발효하였다.<sup>69)</sup> 베트남 외교부는 2016. 10. 10. 「조약 발효 통보」<sup>70)</sup>를 통하여 송달협약 발효일과 베트남이 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선언한 내용을 통보하였다. 송달협약 제21조는 각 체약국이 네덜란드 외무부에 통보할 사항을 열거하는데,<sup>71)</sup> 베트남 정부는 송달협약 제2조에 따른 중앙당국과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증명서 작성기관으로 법무부를 지정하였고,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이의와 제15조 제2항<sup>72)</sup>에 따른 선언을 통보하였다. 베트남의 송달협약 유보 및 선언 사항은 이 글의 말미에 첨부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베트남은 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합동시행규칙을 개정한 이외에, 별도의 이행법률을 제정하거나 민사소송법 또는 사법공조법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조약법에 따른 송달협약의 이행계획으로서, 베트남 총리는 2016. 11. 29. 「베트남 송달협약 이행계획 승인 결정」<sup>73)</sup>을, 최고인민법원은 2017. 3. 9.

69) 송달협약 제28조에 따르면, 협약은 헤이그회의 제10차 회기에 대표를 파견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하여는 가입서의 기탁 전에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네덜란드 외무부에서 그 가입을 통보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가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효하는데, 이러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송달협약은 가입국에 대하여 전술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의 초일부터 발효한다.

70) 베트남 조약법에 따르면, 외교부는 조약의 발효에 관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조약의 발효일에 대해 통보하고(조약법 제56조 제1항), 다자조약 기탁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베트남의 유보선언, 다른 당사국의 유보의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 유보 및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의 발효일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조약법 제56조 제2항). 외교부는 이러한 조약법 조항에 근거하여 송달협약의 「조약 발효 통보(Thông báo về việc điều ước quốc tế có hiệu lực, 번호: 62/2016/TB-LPQT)」를 공포한 것이다.

71)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① 제2조 및 제18조에 따른 당국의 지정, ② 제6조에 의해 증명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 당국의 지정, ③ 제9조에 의해 영사관을 통해 전달되는 문서를 수령할 권한을 갖는 당국의 지정, ④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한 송부방식의 이용에 대한 이의, ⑤ 제15조 제2항 및 제16조 제3항에 의한 선언, ⑥ 위의 지정·이의 및 선언에 대한 일체의 변경.

72) 협약의 원문은 제○항을 표시하지 않지만, ‘paragraph’(영어) 또는 ‘alinéa’(불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이를 ‘항’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석광현(註1), 242면, 각주 82번. 이 글에서는 협약의 ‘paragraph’는 ‘항’으로, ‘sub-paragraph’는 ‘호’로 번역한다.

73) 베트남 조약법(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총리는 베트남이 체약국인 조약의 이행에 책임을 지고, 그 이행계획을 승인하며, 조약의 이행을 위한 지도 및 기타 조치를 결정한다. 총리가 승인하는 이행계획은 조약법 제29조 제3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되는 조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규범문서(국회의 법률·의결 또는 국회상무

「인민법원 송달협약 이행계획 승인 결정」<sup>74)</sup>을 공포하였다.

### 1. 목적과 적용범위

송달협약은 한 계약국에서 다른 계약국으로, 후자에서의 송달을 위하여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가 전달되는 경로를 제공한다. 송달협약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문서의 전달을 주로 다루고, 실제 소장 송달에 관련된

위원회의 법령·의결 수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총리가 조약 이행계획을 승인하면 제안기관(조약 협상을 제안한 기관)과 관련 당국 및 단체는 자신의 임무와 권한 내에서 그 계획을 실행할 책임이 있다(조약법 제76조 제5항). 베트남 총리는 이러한 조약법 조항에 근거하여 「베트남 송달협약 이행계획 승인 결정(Quyết định phê duyệt Kế hoạch thực hiện Công ước La Hay năm 1965 về Tổng đạt ra nước ngoài giấy tờ tư pháp và ngoài tư pháp trong lĩnh vực dân sự hoặc thương mại của Việt Nam, 번호: 2312/QĐ-TTg)」을 공포한 것이다. 이 결정문은 베트남의 협약 계약국으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고 그 이익을 최대한 활용하며, 베트남의 송달 촉탁의 역량과 효과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민사사법공조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제1조 제Ⅲ항), 다음의 사항에 관한 송달협약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제1조 제Ⅳ항). ① 협약의 효과적 이행 (협약에 따른 문서송달의 이행, 사법촉탁활동의 전산화 촉진, 협약 이행 상황의 정기적 검토·평가·통계), ② 협약에 관한 홍보, 보급, 훈련, 인식 강화 (협약에 관한 홍보·보급, 협약 실시를 위한 초기 안내자료 작성·보급, 협약 실시에 관한 심화 안내자료 작성·보급, 협약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업데이트), ③ 협약 이행 간부진의 조직 강화 및 능력 고양 (중앙당국의 이행 조직 강화 및 역할 발휘, 협약에 따른 송달 이행 조직 강화, 협약 실시 간부진의 임무 안내 및 능력 고양, 협약 관련 내용의 헤이그회의에 간부 파견, 협약 계약국과 교류·협력), ④ 문서송달에 관한 법률체제 연구 및 보완 (사법공조법 개정·보완 연구, 문서송달 사법촉탁 집행활동의 사회화, 문서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안내하는 법률규범문서의 검토·연구·제안, 민사사법공조 양자조약의 문서송달 관련 규정의 연구·점검), ⑤ 계약국 권리의무의 충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능력 유지.

- 74) 조약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등은 자신의 임무와 권한 내에서 베트남이 계약국인 조약의 이행을 주관하거나 제안기관에 협력해야 한다(조약법 제80조 제1항). 이에 따라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송달협약 이행계획 승인 결정(Quyết định phê duyệt Kế hoạch thực hiện Công ước La Hay năm 1965 về tổng đạt ra nước ngoài giấy tờ tư pháp và ngoài tư pháp trong lĩnh vực dân sự hoặc thương mại tại Tòa án nhân dân, 번호: 25/QĐ-TANDTC)」을 공포하였다. 이 결정문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인민법원의 송달협약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제Ⅱ조). ① 인민법원에서의 협약 이행을 지시·관리·조사·감독·독려하는 최고인민법원 지도자에 대한 자문, ② 협약 이행의 조직, ③ 협약 이행의 검토, 평가, 통계, ④ 협약에 관한 홍보, 보급, 훈련, 인식 강화, ⑤ 협약 이행 간부진의 역량 강화, ⑥ 민사사법공조, 문서송달 관련 법률체제 연구 및 보완.

실체법을 구성하지는 않는다.<sup>75)</sup> 송달협약은 수신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송달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창설하고, 절차를 단순하고 신속하게 하여 사법공조 조직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송달협약 전문). 송달협약 47개 계약국의 201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협약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제 덕분에 촉탁의 75%가 2개월 내에 집행되었다고 한다.<sup>76)</sup>

송달협약은 민사 또는 상사에 있어서 문서를 해외에 송달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만(송달협약 제1조), ‘민사 또는 상사’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는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이 용어가 형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민상사와 구분되는 다양한 분류(행정, 공법, 조세, 가사 등)가 사용되므로 차이가 있다.<sup>77)</sup> 1989년 헤이그회의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① ‘민사 또는 상사’라는 용어는 촉탁국이나 수탁국의 법률을 배타적으로 참조하지 않고 협약에 독자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며,<sup>78)</sup> ② 사법과 공법 사이의 회색지대에서는 파산, 보험, 노동 등의 사건이 그 개념 범위에 포함되고, ③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법으로 인정되는 사건(가령 조세 사건)은 제외되지만, ④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국이 공법 사건에 협약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채택하였다.<sup>79)</sup> 우리 민사소송법의 개념에 따르면 가사도 민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송달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가사는 민사에 포함되는

75)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헤이그회의 웹페이지, <https://assets.hcch.net/docs/aed182a1-de95-4eaf-a1ae-25ade7cd09de.pdf> (2021. 4. 23. 방문) 참조.

76) “Outline - Service Convention”, 헤이그회의 웹페이지, <https://assets.hcch.net/docs/f4ccc07b-55ed-4ea7-8fb9-8a2b28549e1d.pdf> (2021. 4. 23. 방문) 참조.

77) David McCl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ivil and Criminal Matters*,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25.

78) 독자적인 해석의 개념은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에 대해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제31조)에 따른 전통적인 해석원칙이다. 법원행정처, 헤이그송달협약 실무편람, 2018, 95면. (본서는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Practical Handbook on the Operation of the Service Convention*, 4th Edition, 2016을 국문 번역한 것이다.)

79)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port on the work of the Special Commission of April 1989 on the operation of the Hague Conventions of 15 November 1965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and of 18 March 1970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1989. 4., para. 26. 이하 “1989년 특별위원회 보고서”로 인용한다.

것으로 해석된다.<sup>80)</sup>

송달협약은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에 적용된다(송달협약 제1조). 베트남에서 ‘재판상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171조가 규정하는 소송문서<sup>81)</sup>를 의미한다. 한편 ‘재판외 문서’는 직접적으로 재판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재판상 문서와 다르고, 당국 또는 사법공무원의 개입<sup>82)</sup>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문서와 다른데, 그 정의는 촉탁국의 법에 의존한다.<sup>83)</sup> 그러나 베트남 법률은 재판외 문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sup>84)</sup>

## 2.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

### 가. 중앙당국의 지정

송달협약은 이전에 헤이그회의가 성안한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1954. 3. 1. 협약」<sup>85)</sup>(이하 “민사소송협약”)의 해외송달 관련 규정을 개선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체약국이 중앙당국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송달을 하

80) 석광현(註1), 223면.

81) 민사소송법상 소송문서는 ① 민사소송 중 통보, 고지, 소환장, 초청장, ② 법원의 판결, 결정, ③ 검찰원의 항소결정, 민사판결집행기관의 문서, ④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소송문서로 구성된다(민사소송법 제171조).

82) 송달협약 제17조는 “체약국의 당국 및 사법공무원이 작성하는 재판외 문서는 다른 체약국으로의 송달을 위하여 이 협약에 의한 방식과 규정에 따라 전달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83) 재판외 문서는 공증문서, 지불요구서, 임대차 또는 고용계약 관련 종료통지서, 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당국 또는 집행관 발행의 인수(지급) 거절증서, 조정기일 통지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서, 유언장, 사망자의 유산에 관한 수익자에 대한 통지, 아동 양육비 지급에 관한 결정, 행정기관에 의한 별거 및 이혼 허가명령에 관한 결정, 집행관에 의한 소환장, 권리증, 법정경위에 의해 행해진 집행과 관련된 문서를 포함한다. 혼인에 대한 이의서, 입양에 대한 동의서 및 친생에 관한 인지서도 특정 형식이 준수된 경우 재판외 문서에 포함된다. 법원행정처(註78), 100면 이하.

84) 헤이그회의가 2009년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진행한 송달협약 2008. 7. 설문에 따르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16개국은 자국법이 재판외 문서에 관한 개념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미국, 중국(홍콩특별행정구) 등 9개국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Summary of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of July 2008 relating to the Service Convention, with Analytical Comments (Prel. Doc. No 14), 2009. 1., para. 107.

85) 민사소송협약의 영문명은 「Convention of 1 March 1954 on Civil Procedure」이다.

도록 하는 ‘중앙당국 제도의 창설’이다.<sup>86)</sup> 송달협약 제2조에 따르면, 각 계약국은 다른 계약국으로부터 송달촉탁을 수령하고 이를 처리할 중앙당국을 지정해야 한다. 즉, 중앙당국은 송달촉탁의 수령기관이지 송부기관은 아니다.<sup>87)</sup> 이러한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이 송달협약의 원칙적인 송달방식이다. 베트남 법무부는 주요송달경로가 협약상 대체경로(직접외교·영사경로, 간접영사경로, 간접외교경로, 우편경로)에 비하여 실무상 신속하고 효율적이므로,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은 주요송달경로를 선택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sup>88)</sup>

계약국은 자국법에 따라 중앙당국을 조직하므로 중앙당국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sup>89)</sup> 우리나라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제담당관을,<sup>90)</sup> 미국은 법무부 민사국 국제사법공조실을,<sup>91)</sup> 일본은 외교부를<sup>92)</sup> 각각 중앙당국으로 지정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법무부(참조: 국제법률국<sup>93)</sup>)를 중앙당국으로 지정하였

86) 송달협약은 중앙당국 시스템을 구축한 최초의 헤이그회의 협약이다. 그 이후로 증거협약을 비롯한 많은 헤이그회의 협약에서 동일한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법원행정처(註78), 112면.

87) 송달촉탁의 송부기관은 촉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사법공무원이다(송달협약 제3조). 송달협약의 성안 과정에서 중앙당국을 수령기관이자 송부기관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법원이 송달촉탁을 해야 하는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거부되었다. David McClean(註77), p. 29.

88) Bộ Tư pháp(註21), tr. 13.

89) 중앙당국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어야 하나, 송달협약은 중앙당국이 사적단체에 자신의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Phạm Hồ Hương, “Công ước La Hay về tổng đặt ra nước ngoài giấy tờ tư pháp và ngoài tư pháp trong lĩnh vực dân sự hoặc thương mại”, Trang thông tin Tương trợ tư pháp, <https://tttp.toaan.gov.vn/webcenter/portal/tttp/chi-tiet-dieu-uoc?dDocName=TOAAN009789> (2021. 6. 15. 방문) 참조.

90) “Korea, Republic of - Central Authority & practical information”, 헤이그회의 웹페이지, <https://www.hcch.net/en/states/authorities/details3/?aid=262> (2021. 6. 17. 방문) 참조.

91) “United States of America - Central Authority & practical information”, 헤이그회의 웹페이지, <https://www.hcch.net/en/states/authorities/details3/?aid=279> (2021. 6. 17. 방문) 참조.

92) “Japan - Central Authority & practical information”, 헤이그회의 웹페이지, <https://www.hcch.net/en/states/authorities/details3/?aid=261> (2021. 6. 17. 방문) 참조.

93) 베트남 법무부 국제법률국(International Law Department)은 ① 조약 등 국제법 관련 초안의 성안, ② 국제분쟁해결의 참여, ③ 사법공조에 관한 국가행정을 담당한다. “Vụ Pháp luật quốc tế”,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Bộ Tư pháp, <https://moj.gov.vn/qt/Pages/co-cau-to-chuc.aspx?ItemID=4> (2021. 4. 23. 방문) 참조.

다. 종래 베트남의 사법공조는 사법공조법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이행되었으므로, 법무부를 송달협약의 중앙당국으로 지정한 것은 적절하다.

베트남이 송달협약에 가입하여 중앙당국을 지정한 결과,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의 송달 경로는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한국이 베트남으로 하는 송달	베트남이 한국으로 하는 송달
송달협약 가입 전	한국 법원 - 한국 법원행정처 - 한국 외교부 - 주베 한국 재외공관 - 베트남 외교부 (생략 가능) - 베트남 법무부 - 베트남 법원 - 송달받을 자	베트남 법원 - 베트남 법무부 - 베트남 외교부 - 주한 베트남 재외공관 - 한국 외교부 - 한국 법원행정처 - 한국 법원 - 송달받을 자
송달협약 가입 후	한국 법원 - 한국 법원행정처 - 한국 외교부 (실무상 생략) <sup>94)</sup> - 베트남 법무부 - 베트남 법원 - 송달받을 자	베트남 법원 - 베트남 법무부 - 한국 법원행정처 - 한국 법원 - 송달받을 자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은 송달협약 가입 전의 외교경로와 비교하여 “한국 외교부 (송달협약 가입 후 실무상 생략) - 주베 한국 재외공관 - 베트남 외교부” 또는 “베트남 외교부 - 주한 베트남 재외공관 - 한국 외교부”의 단계가 생략되므로 더욱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다.

#### 나. 촉탁서의 송부

촉탁국법상 권한 있는 당국이나 사법공무원은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송달협약 양식에 따른 촉탁서를 수탁국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송달협약 제3조). 촉탁서의 송부기관은 ‘당국이나 사법공무원’이므로 사인은 포함하지 않지만, 소송대리인은 촉탁국법상 권한 있는 당국에 포함될 수 있다.<sup>95)</sup> 베트남 사법공조법(제14조)은 법무부를 촉탁서의 송부기관으로 규정

94) 우리나라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으로의 송달은 우리나라가 송달협약에 가입한 후에도 외교부가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송달을 촉탁하는 기관은 수소법원 재판장이지만, 국제민사사법공조법상 촉탁서는 외교부를 경유해야지, 재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외국 중앙당국으로 송부할 수는 없다. 석광현(註45), 318면.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중앙당국인 법원행정처가 직접 처리하고 있다(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

한다. 또한 베트남은 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법무부를 중앙기관이자 송부 기관으로 지정한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촉탁서의 수령기관인 협약상 중앙당국(법원행정처)과 국제민사사법공조법상 촉탁서의 송부기관(외교부)이 다른데, 베트남이 촉탁서의 송부기관과 수령기관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우리보다 현명하다.

#### 다. 촉탁의 집행

중앙당국은 아래의 방식에 따라 촉탁서를 스스로 송달하거나 적절한 기관이 송달하도록 한다(송달협약 제5조).

- ① 공식적인 송달(formal service): 국내소송에서 수탁국에 소재하는 자에 대한 문서의 송달에 대해 수탁국법이 정하는 방식(송달협약 제5조 제1항 제a호)
- ② 특정한 방식에 의한 송달(service by a particular method): 수탁국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신청인이 요청한 특정한 방식<sup>96)</sup>(송달협약 제5조 제1항 제b호)
- ③ 비공식적 교부(informal delivery): 수탁국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문서를 자발적으로 수령하는 수신인에게 교부하는 방식<sup>97)</sup>(송달협약 제5조 제2항)

①번 방식에 관하여, 베트남에서는 법무부가 권한 있는 당국이나 집행관에게 문서를 전달하고, 권한 있는 당국이나 집행관이 수신인 또는 문서 수

95) 영국의 사무변호사(solicitor)는 촉탁국의 법률상 권한 있는 당국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원행정처(註78), 117면. 미국은 실무정보에 자국의 송부기관은 “모든 변호사(any attorney)”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다. “United States of America - Central Authority & practical information”(註91) 참조.

96) 특정한 방식에 의한 송달은, 수탁국 법률이 자국의 송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일부 국가의 우려에 따라 협약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특정한 방식에 의한 송달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Phạm Hồ Hương(註89) 참조.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특정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증거협약 제12조 제b호).

97) 이러한 비공식적 전달방식은 많은 당사국에서 인정된다. 수신인에게 문서를 전달하는 자는 주로 경찰공무원이다. 대부분의 경우 수신인은 문서를 자발적으로 수령하거나 경찰서에서 회수한다. 법원행정처(註78), 129면 이하. 수신인이 문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중앙당국은 문서를 국내법에 따라 송달하거나 송달집행불가를 사유로 촉탁당국에 반송한다. Phạm Hồ Hương(註89) 참조.

령 권한을 가진 자에게 직접 문서를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접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과 사법공조법에 규정된 다른 방식을 적용한다.<sup>98)</sup>

중앙당국은 ①, ②번 방식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할 문서가 수탁국의 공용어로 기재되거나 번역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송달협약 제5조 제3항). 이러한 요구는 일반적인 선언으로 할 수도 있고 개별 사건마다 할 수도 있다.<sup>99)</sup> 베트남은 송달 촉탁서와 베트남에서 송달될 모든 문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거나 베트남어 번역문(번역자 서명의 인증이나 공증 필요)을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하였다.<sup>100)</sup> 송달협약 제7조에 따르면, 협약에 부속된 양식의 표준 문언은 불어나 영어로 기재되어야 하고 촉탁국의 공용어로 병기할 수 있으나, 문언에 대응하는 공란은 수탁국 언어나 불어 또는 영어로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베트남의 중앙당국에 송부하는 촉탁서의 양식 자체(표준 문언)는 베트남어 번역이 불필요하나, 양식의 공란은 베트남어로 기재하거나 베트남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중앙당국은 촉탁서가 송달협약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거나 촉탁서를 집행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통지하면서 송달촉탁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송달협약 제4조,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그러나 수탁국은 국내법에 따라 소송물에 대하여 전속관할권을 가진다거나 촉탁이 근거한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근거만으로는 촉탁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송달협약 제13조 제2항).

98) “Viet Nam – Central Authority and Practical Information”, 헤이그회의의 웹페이지, <https://www.hcch.net/en/states/authorities/details3/?aid=1054> (2021. 6. 17. 방문) 참조. 이하 “베트남 송달협약 실무정보”로 인용한다. 베트남 민사소송법(제173조)은 송달 방식으로 ① 직접 또는 우편이나 위임을 받은 제3자를 통한 송달, ② 전자적 방식을 통한 송달, ③ 공시송달, ④ 대중매체상의 통보, ⑤ 민사소송법 제38장에 규정된 기타 방식(외국에 있는 당사자에 대한 송달방식)을 규정한다.

99) 법원행정처(註78), 133면 이하.

100) 다만 송달협약상 촉탁국 국민에 대한 직접외교·영사경로를 통한 송달(제8조)이나 우편경로를 통한 송달(제10조 제a호)의 경우에는 베트남어 번역이 불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문번역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선언을 하지 않았다. 석광현(註45), 305면은 우리 정부가 일반적인 선언을 하지 않은 이유를, 송달협약 제21조가 번역 요청을 일반적인 선언으로 할 것을 명시하지 않고, 외국의 송부기관이 자발적으로 국문번역을 첨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는 촉탁서를 받은 후에도 국문번역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하면서, 다른 계약국에게 국문번역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반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 라. 증명서의 송부

수탁국의 중앙당국이나 수탁국이 지정하는 당국은 송달협약에 부속된 양식에 따라 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해야 한다(송달협약 제6조). 증명서에는 문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문서가 송달되었다는 취지, 송달 방식, 송달지, 송달일자, 해당 문서를 교부받은 자를 기재하고, 문서가 송달되지 못한 경우에는 송달되지 못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베트남은 송달협약 제6조에 따른 증명서를 작성할 유일한 기관으로 중앙당국인 법무부를 지정하였다.<sup>101)</sup>

## 3. 외교관, 영사관원에 의한 송달

### 가. 외교관, 영사관원이 해외 소재자에게 직접 하는 송달

촉탁국은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국의 외교관이나 영사관원을 통하여 직접 해외 소재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송달협약 제8조 제1항). 이러한 직접송달방식은 송달협약 제9조에 따라 영사관원(예외적으로 외교관)이 목적지국의 지정당국으로 송달하는 간접송달방식과 구별된다.

다만 송달협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체약국은 촉탁국의 외교관이나 영사관원이 자국 영역 안에서 촉탁국민이 아닌 자에게 직접 문서를 송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베트남은 외교관, 영사관원에 의한 직접송달방식에 반대하는 선언을 하였다.<sup>102)</sup> 이는 다른 체약국이 외교관, 영사관원을 통해 베트남으로 하는 송달은 그 체약국민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베트남 국민이나 제3국민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취지이다.<sup>103)</sup> 베트남 법

101) 우리나라는 증명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중앙당국 이외에 '송달을 실시할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직원'을 지정하였다. 이는 증명서의 작성을 굳이 중앙당국에 집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석광현(註45), 297면

102) 우리 정부도 외교관이나 영사관원에 의한 직접송달에 반대하는 선언을 하였다.

103)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모두 체약국인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파견국 영사는 파견국 법원을 위하여 소송서류 또는 소송 이외의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영사의 권한을 파견국민에 대한 송달에 한정하지는 않으나, 접수국에 거주하는 파견국민 이외의 자에 대한 파견국 영사에 의한 송달은 접수국의 동의가 없는 한 접수국 주권의 침해로서 국제관습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진성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국제사법공조”, 법외사건의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34집

무부는 수신인이 베트남 국민이 아니라면 송달협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반대하지 않은 체약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직접외교·영사경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하였는데, 이는 상대국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04)</sup>

#### 나. 영사관원이 목적지국의 지정당국으로 하는 송달

송달협약의 체약국은 문서송달을 위하여 영사관의 경로를 이용하여 목적지국이 지정하는 당국으로 문서를 전달할 수 있다(송달협약 제9조 제1항).<sup>105)</sup> 축탁국의 영사관원은 목적지국의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목적지국의 지정당국에 바로 전달하므로, 이러한 간접영사경로는 외교경로를 통한 송달보다 간편하다. 체약국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sup>106)</sup>에는 간접외교경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송달협약 제9조 제2항).

베트남은 중앙당국인 법무부를 송달협약 제9조 제1항에 따른 당국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베트남은 간접영사경로를 통한 송달방식을 허용한다. 그러나 베트남 법무부는 간접영사경로나 간접외교경로는 당사자가 국가이거나 정부기관인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된다고 설명한다.<sup>107)</sup> 한편 우리 정부는 제9조 제1항의 당국을 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의 영사관원이 한국으로 하는 간접적인 송달은 송달협약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1986), 482면. 이는 외교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석광현(註1), 230면. 한편 우리 대법원은 국제관습법이 아닌 국제예약을 근거로 하여,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영사에 의한 직접송달은 자국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104) Bộ Tư pháp(註21), tr. 14.

105) 송달협약 제9조에 따른 영사관원을 통한 간접송달방식은 민사소송협약으로부터 가져온 것인데, 이는 민사소송협약에서는 원칙적 송달방식이었으나 송달협약에서는 부차적 송달방식으로 격하되었다. 석광현(註1), 232면.

106) 주권국가에 대한 소송에서의 송달을 예로 들 수 있다. 1977년 특별위원회에서 일부는 간접외교경로가 송달의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 다른 일부는 이 방식이 사실상 송달의 지연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법원행정처(註78), 158면.

107) Bộ Tư pháp(註21), tr. 14.

#### 4. 간이한 송달

##### 가. 우편에 의한 송달

송달협약은 목적지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외국에 소재하는 자에게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송달협약 제10조 제a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주체는 외국의 법원일 수도 있고 당사자일 수도 있다.<sup>108)</sup> 우편에 의한 송달을 허용하는 것이 다수 계약국의 입장이고, 1977년 특별위원회는 우편경로의 사용을 목적지국의 주권침해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취하였다.<sup>109)</sup> 이메일과 팩스가 우편경로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데, 송달협약은 1965년에 채택되어 이러한 현대적 기술을 언급하지 않으나, 2003년 특별위원회는 기능적 동등성을 기준으로 현대적 기술의 사용을 검토하였으며, 협약의 적용과 운영은 현대적 기술에 기대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110)</sup>

우편에 의한 송달은 목적지국이 반대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송달협약 제10조 제1항). 베트남은 수신이 확인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을 것을 전제로, 송달협약 제10조 제a호의 우편경로를 통한 문서송달에 이의하지 않았다.<sup>111)</sup> 한편 우리나라는 우편에 의한 송달을 포함하여 송달협약 제10조가 규정하는 간이한 송달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우리 법원은 실무상 송달협약 제10조 제a호에 대해 이의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하지 않고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방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sup>112)</sup>

108) 석광현(註1), 233면.

109) 법원행정처(註78), 162면.

110) 법원행정처(註78), 255면 이하.

111) 베트남 실무상 우편에 의한 송달이 절대적인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문서가 분실되거나 잘못 송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베트남이 송달협약상 우편에 의한 송달을 허용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Nguyễn Đắc Dũng, “Xã hội hóa tổng đạt giấy tờ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theo công ước Lahay 1965 về Tổng đạt”, Ủy ban nhân dân tỉnh Bắc Ninh Văn phòng Thừa Phát Lại Kinh Bắc(2018. 8. 24.), <http://thuaphatlaikinhbac.vn/xa-hoi-hoa-tong-dat-giay-to-nuoc-ngoai-tai-viet-nam-theo-cong-uoc-lahay-1965-ve-tong-dat.html> 참조.

112) 법원행정처, 국제거래재판실무편람, 2006, 32면.

#### 나. 촉탁국의 사법공무원 등이 목적지국의 사법공무원 등에게 직접 하는 송달

사법공무원 간의 직접 송달은 가장 이상적인 국제사법공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113)</sup> 송달협약 제10조 제b호에 따르면, 목적지국이 이의하지 않은 한 촉탁국의 사법공무원, 관리, 기타 권한 있는 자<sup>114)</sup>는 목적지국의 사법공무원, 관리, 기타 권한 있는 자에게 직접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sup>115)</sup>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송달협약 제10조 제b호의 송달방식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 다. 이해관계인이 목적지국의 사법공무원 등에게 직접 하는 송달

송달협약 제10조 제c호에 따르면, 목적지국이 이의하지 않은 한 재판절차의 모든 이해관계인은 목적지국의 사법공무원, 관리, 기타 권한 있는 자에게 직접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이해관계인이 사법공무원 등에게 하는 송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였다.

#### 라. 계약국 간의 합의나 계약국 국내법이 허용하는 기타 방식에 의한 송달

송달협약 계약국들은 협약이 규정한 방식 외의 전달경로를 사용할 것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송달협약 제11조).<sup>116)</sup> 베트남은 16건의 민사사법공조 양자조약이 기타 전달경로(derogatory channels)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sup>117)</sup> 한편 송달협약(제19조)은 계약국의 국내법이 해외에서 발송된 문

113) 진성규(註103), 477면.

114) 영국과 미국에서는 영국의 사무변호사(solicitor)가 '기타 권한 있는 자'에 포함된다고 본다. 법원행정처(註78), 175면.

115)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신청인은 사법공무원이나 목적지국의 법에 따른 권한 있는 자의 고용으로 인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증거협약 제12조 제a호).

116) 송달과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는 조약으로 북유럽국가들(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체결한 「법률공조에 관한 1974. 4. 26. 노르딕협약(Nordic Convention on Mutual Legal Assistance of 26 April 1974)」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법원 간의 직접적인 경로를 허용한다. 법원행정처(註78), 179면.

117) 구체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 러시아, 중국, 헝가리, 몽골,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폴란드, 불가리아, 프랑스, 라오스, 카자흐스탄, 쿠바, 캄보디아, 대만, 북한과 체결한 양자조약이 기타 전달경로를 규정한다고 한다. 베트남 송달협약 실무정보

서에 대하여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 외의 송부방식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많은 계약국에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sup>118)</sup> 베트남법 역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sup>119)</sup>

## 5. 피고의 이익의 보호

### 가. 결석판결의 조건

송달협약은 단순하고 신속한 해외송달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본적으로 피고보다 원고의 이익을 보호한다.<sup>120)</sup> 이에 피고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협약은 결석판결의 조건을 규정한다. 소환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문서가 해외에 송부되었으나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sup>121)</sup> 촉탁국의 법원이 판결을 하려면 ① 그 문서가 국내소송에서의 문서송달을 위하여 수탁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수탁국에 있는 자에게 송달되었거나, 송달협약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피고 또는 그의 거주지에 실제 교부되었어야 하고, ② 이러한 송달 또는 교부가 피고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졌어야 한다(송달협약 제15조 제1항).<sup>122)</sup>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계약국은 ① 문서가 송달협약에 규정된 방식 중 하나로 송부되었고, ② 문서의 송부일로부터 판사가 적절하다고 보는 기간(최소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③ 수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송달 또는 교부가 있었다는 증명을 취득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이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송달협약 제15조 제2항). 베트남 정부는 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다.<sup>123)</sup> 따라서 베트남 법원은 피고

---

(註98) 참조.

118) 법원행정처(註78), 179면 이하.

119) 베트남 송달협약 실무정보(註98) 참조.

120) 석광현(註1), 241면.

121) 송달받을 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송달협약 제1조 제2항에 따라 송달협약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22) 만약 피고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다면, 촉탁국의 법원은 다시 송달을 시도하거나 재판을 중지해야 하므로 결석판결을 할 권한을 제한받는다. 석광현(註1), 242면.

가 출석하지 않고 송달 또는 교부의 증명이 없더라도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결석판결을 할 수 있다.

베트남 민사소송법(제474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 대한 송달이 실패한 경우에 법원은 1개월 동안 공시 및 웹사이트 통보를 하고 나서 결석재판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제3항, 제477조 제5항 제b호). 따라서 베트남 법원은 송달협약 제15조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한 이후에 판결을 내릴 것이다.

#### 나. 결석판결 상소기간 만료로부터 피고의 구제

송달협약(제16조 제1항)은 결석판결을 받은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 ① 피고가 귀책사유 없이 충분한 기간 동안 문서나 판결에 대한 인지가 없었고, ② 피고가 반증이 없는 한 승소가 확실한 변론을 제시한 경우에는 촉탁국의 법원이 상소기간의 만료로부터 피고를 구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고의 구제신청은 판결을 인지한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접수되어야 하는데(송달협약 제16조 제2항), 계약국은 재판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최소 1년 이상) 후에 접수된 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송달협약 제16조 제3항). 베트남은 이러한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sup>123)</sup> 베트남 민사소송법상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 대한 송달이 실패하여 공시송달이 실시된 경우에 결석재판의 상소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2개월이다(민사소송법 제479조 제3항).

## 6. 소결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종래에 국내법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대국에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이는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였고 상대국이 촉탁에 따른 국제법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국에 이어 베트남이

123) 우리 정부도 송달협약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다.

124) 우리나라도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났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추완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행위의 추완이 가능하다.

송달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이제 양국 간의 송달은 협약에 따라 중앙당국을 통하여 더욱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이 송달협약에 가입한 이후에 외교경로를 통한 송달은 송달협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사법공조를 촉진하는 취지에서 양국이 외교경로를 통한 송달에 대해 사법공조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sup>125)</sup> 참고로 한국이 현재 외국과 체결한 모든 민사사법공조 양자조약은 외교경로 이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sup>126)</sup>

우리나라가 중앙당국을 통하지 않은 직접외교·영사경로(제8조), 간접영사경로(제9조 제1항), 우편경로 및 기타 간이한 송달방식(제10조)을 모두 배제한 반면에, 베트남이 간접영사경로와 우편경로를 통한 송달을 허용한 점은 상대적으로 전향적이다.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선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양국의 송달협약에 따른 국제민사사법공조 제도를 표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베트남	한국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	중앙당국 (제2조)	법무부	법원행정처
	수탁국어 번역 (제5조 제2항)	필요	선언하지 않음
	증명서 작성기관 (제6조)	법무부	중앙당국 + 법원직원
외교관, 영사관원에 의한 송달	직접외교·영사경로 (제8조) (촉탁국민에 대한 송달 제외)	반대	반대
	간접영사경로 (제9조 제1항)	허용	불허
간이한 송달	우편경로 (제10조 제a호)	허용	반대
	기타 (제10조 제b, c호)	반대	반대
피고 불출석 시 결석판결 (제15조 제2항)		허용	허용

송달협약에 따라 베트남에 문서의 송달을 촉탁할 때 실무적으로 참조할

125) 석광현(註1), 232면.

126) 우리나라는 2021. 6. 현재 호주(1999. 9. 17. 체결, 2000. 1. 16. 발효), 중국(2003. 7. 7. 서명, 2005. 4. 27. 발효), 몽골(2008. 10. 15. 서명, 2010. 5. 8. 발효), 우즈베키스탄(2012. 9. 20. 서명, 2013. 8. 11. 발효), 태국(2013. 5. 21. 서명, 2015. 4. 16. 발효)의 5개국과 민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들 전부가 외교경로 이용권을 규정한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앙당국은 ① 공식적인 송달, ② 특정한 방식에 의한 송달, ③ 비공식적 교부 중의 하나의 방식에 의해 문서를 송달하는데, ①, ②번 방식으로 송달하는 경우에 모든 문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거나 번역자 서명이 공증 또는 인증된 베트남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즉, 영어나 불어로 번역문을 작성하면 안 된다. 송달 촉탁의 집행과 관련된 비용은 문서가 집행관이나 특정한 방식에 의해 송달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베트남 법무부는 촉탁국에 통지를 하며, 모든 비용은 권한 있는 당국이나 집행관이 촉탁을 집행하기 전에 지불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송달 협약에 따른 촉탁의 집행기간은 약 3~6개월이다.<sup>127)</sup>

베트남 법무부의 주소는 'Ministry of Justice, International Law Department, 60 Tran Phu street, Ba Dinh district, Ha Noi, Viet Nam'이다. 송달협약과 관련하여 베트남 법무부에 전화(+84 46273 9532), 팩스(+84 6273 9359), 이메일(haguevietnam@moj.gov.vn)로 연락할 수 있는데, 담당자는 법무부 국제법률국(International Law Department) 국제사법과(Private International Law Division)이고, 이메일, 팩스, 서면으로 연락하는 경우에는 영어가 가능하나 전화로는 베트남어만 가능하다고 한다.<sup>128)</sup>

## V. 증거협약에 따른 국제민사사법공조

베트남 대통령은 2020. 1. 13. 「증거협약 가입 결정」을 공포하였다.<sup>129)</sup> 베트남 정부는 2020. 3. 4. 네덜란드 외교부에 증거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였고, 증거협약은 베트남에서 2020. 5. 3. 발효하였다.<sup>130)</sup> 베트남 외교부는 2020.

127) 베트남 송달협약 실무정보(註98) 참조.

128) 베트남 송달협약 실무정보(註98) 참조.

129) 베트남 대통령은 조약법(제6조 제2항, 제29조 제3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증거협약 가입 결정(Quyết định về việc gia nhập Công ước La Hay về thu thập chứng cứ ở nước ngoài trong lĩnh vực dân sự hoặc thương mại, 번호: 70/2020/QĐ-CTN)」을 공포하였다. 이 결정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베트남이 증거협약에 가입하면서 국회나 국회상무위원회가 별도의 증거협약 이행법률을 제정하지는 않았으므로, 결정문에는 증거협약의 직접 적용을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30) 증거협약은 헤이그회의 회원국으로서 헤이그회의 제11차 회기에 대표를 파견하지 아니한 가입국에 대하여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

3. 30. 「조약 발효 통보」<sup>131)</sup>를 통하여 증거협약 발효일과 베트남이 증거협약에 가입하면서 선언한 내용을 통보하였다. 체약국은 증거협약 제33조에 따라 가입 시에 제4조 제2항과 제II장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할 수 있고, 증거협약 제35조에 따라 네덜란드 외무부에 일정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sup>132)</sup> 베트남 정부는 증거협약 제2조에 따른 중앙당국으로 법무부를 지정하였고, 제4조 제2항 및 제II장의 적용을 유보하였으며, 제4조 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선언을 통보하였다. 베트남의 증거협약 유보 및 선언 사항은 이 글의 말미에 첨부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베트남은 증거협약에 가입하면서 별도의 이행법률을 제정하거나 민사소송법 또는 사법공조법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조약법에 따른 증거협약의 이행계획으로서, 베트남 총리는 2020. 6. 30. 「베트남 증거협약 이행계획 승인 결정」<sup>133)</sup>을 공포하였다.

다(증거협약 제39조).

131) 베트남 외교부가 증거협약의 「조약 발효 통보(Thông báo về việc về việc điều ước quốc tế có hiệu lực, 번호: 30/2020/TB-LPQT)」를 공포한 것은 송달협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약법 제56조에 근거한 것이다.

132)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① 제2조, 제8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른 당국의 지정, ②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 따라 외교관 및 영사관원에 의한 증거조사에 있어 각각 통지를 수령하고, 필요한 허가를 내주며, 요청되는 원조를 제공할 당국의 지정, ③ 제17조에 따라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에 있어 필요한 허가를 내줄 당국 및 제18조에 규정된 원조를 제공할 당국의 지정, ④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7조에 따른 선언, ⑤ 위 지정 및 선언의 철회 또는 수정, ⑥ 유보의 철회.

133) 베트남 총리는 조약법 제76조에 근거하여 「베트남 증거협약 이행계획 승인 결정 (Quyết định về phê duyệt Kế hoạch thực hiện Công ước La Hay năm 1970 về thu thập chứng cứ ở nước ngoài trong lĩnh vực dân sự hoặc thương mại của Việt Nam, 번호: 924/QĐ-TTg)」을 공포하였다. 이 결정문은 베트남의 협약 체약국으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고 그 이익을 최대한 활용하며, 베트남의 증거조사 촉탁의 역량과 효과를 개선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 해결을 돕고, 국제기준에 따라 민사사법공조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제I조 제1항), 다음의 사항에 관한 증거협약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제II조). ① 협약에 관한 홍보, 보급, 인식 강화 (협약에 관한 홍보·보급, 협약 실시를 위한 안내 자료 작성, 협약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업데이트), ② 협약의 효과적 이행 (중앙당국의 역할과 책임 발휘, 협약에 따른 증거조사 촉탁의 이행, 사법촉탁활동의 전산화 촉진, 협약 이행 상황의 검토·평가·통계), ③ 민사 증거조사 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보완, ④ 협약 실시 간부진의 능력 고양 (협약 실시 간부진의 임무 안내 및 능력 고양, 협약 관련 내용의 헤이그회의에 간부 파견, 협약

## 1. 목적과 적용범위

증거협약은 계약국 간의 민상사 증거조사를 위한 협력 방식을 구축하고, 증거조사와 관련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134)</sup>

증거협약은 송달협약처럼 민사 또는 상사에만 적용되지만(증거협약 제1조), 송달협약과 마찬가지로 ‘민사 또는 상사’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앞서 살펴본 1989년 특별위원회의 견해를 참조할 수 있다. 2014년 특별위원회는 ‘민사 또는 상사’라는 용어는 송달협약과 증거협약 모두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sup>135)</sup> 송달협약과 마찬가지로 증거협약의 해석상 가사는 민사에 포함된다.<sup>136)</sup>

외국에 있는 증거를 조사하는 경우 증거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강행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sup>137)</sup> 1989년 특별위원회 보고서는, 모든 계약국은 외국에 있는 증거를 조사할 때 협약의 강행성에 관한 자국의 입장과 상관없이 협약상 절차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이른바 “first resort” 원칙).<sup>138)</sup> 2009년 특별위원회 결론 및 권고는 당사국 간에 증거협약의 강행성에 대하여 여전히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하지만, 이는 협약의 효과적인 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sup>139)</sup>

외국에 있는 자에게 증언, 소환, 문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sup>140)</sup>에 송

---

계약국과 교류·협력).

134) “Outline – Evidence Convention”. 헤이그회의의 웹페이지, <https://assets.hcch.net/docs/ec1fc148-c2b1-49dc-ba2f-65f45cb2b2d3.pdf> (2021. 4. 23. 방문) 참조.

135)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2014 Special Commission on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Hague Service, Evidence and Access to Justice Conventions, 2014. 5., para. 40.

136) 석광현(註1), 262면.

137) 종래 대륙법계 국가들은 증거협약이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지지하였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의 1987. 6. 15. *Aérospatiale* 사건 판결[482 U.S. 522 (1987)]의 다수의견은 증거협약의 강행성을 부정할 결과, 1980년대 미국과 유럽 간의 사법마찰을 초래하였다. 석광현(註1), 283면 이하.

138) 1989년 특별위원회 보고서(註79). para. 34.

139)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Special Commission on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Hague Apostille, Service, Taking of Evidence and Access to Justice Conventions, 2009. 2., para. 53. 이하 “2009년 특별위원회 결론 및 권고”로 인용한다.

달협약과 증거협약의 관계가 문제된다. 이러한 명령이 재판상 문서에 해당하고 법정지법에 따라 외국에 송달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협약을 적용할 수 있으며,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목적이 아닌 이상 증거협약 제I장(촉탁서에 의한 증거조사)은 적용되지 않는다.<sup>141)</sup> 그러나 제3자(가령 외국에 소재한 증인)에 대한 소환장 송부가 송달협약과 증거협약 중에 무엇이 적용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증거협약이 우선한다.<sup>142)</sup>

한편 베트남은 대항입법(blocking statute)과 관련하여,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은 제한되고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국가기밀보호법 제16조),<sup>143)</sup> 이러한 정보를 승인 없이 제공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형법 제337조 및 제361조)<sup>144)</sup>는 점을 언급하였다.<sup>145)</sup>

140) 이는 ‘외국으로부터의 증거방법의 수집’으로서 ‘외국에서의 증거조사’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석광현(註1), 291면 참조.

141) 다만 송달협약의 일부 계약국은 이러한 명령의 송달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송달협약 제13조 제1항에 따라 촉탁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Lê Mạnh Hùng, Đỗ Ngọc Thanh, “Công ước La Hay năm 1970 về thu thập chứng cứ ở nước ngoài trong lĩnh vực dân sự hoặc thương mại và khả năng Việt Nam gia nhập Công ước này”, Tạp chí Tòa án nhân dân điện tử(2018. 12. 9.), <https://tapchitoaan.vn/bai-viet/phap-luat/cong-uoc-la-hay-nam-1970-ve-thu-thap-chung-cu-o-nuoc-ngoai-trong-linh-vuc-dan-su-hoac-thuong-mai-va-ka-nang-viet-nam-gia-nhap-cong-uoc-nay> 참조.

142) 법원행정처(註78), 99면 이하.

143) 「국가기밀보호법(Luật Bảo vệ bí mật nhà nước, 번호: 29/2018/QH14)에 따르면, 총리는 외국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극비(tuyệt mật)의 제공에 관하여 결정하고, 국방부장관,公安부장관, 기타 권한 있는 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극비와 비밀(mật)의 제공에 관하여 결정한다(국가기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국가기밀은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국가기밀과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외국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하여서만 제공될 수 있다(국가기밀보호법 제16조 제2항). 외국 기관, 단체, 개인이 국가기밀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나 국가기밀과 관련된 공무를 관할하는 베트남 당국에 요청서를 송부해야 한다(국가기밀보호법 제16조 제3항 및 제4항). 요청서를 수령한 베트남 당국은 이를 국가기밀 제공 결정권자에게 전달한다(국가기밀보호법 제16조 제5항).

144) 「형법(Bộ luật hình sự, 번호: 100/2015/QH13) 제337조에 따르면 국가기밀을 고의로 누설한 자는 2~15년의 징역과 1천만~1억 동 of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361조에 따르면 업무기밀을 고의로 누설한 자는 6개월~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145) “Viet Nam – Central Authority and Practical Information”, 헤이그회의의 웹페이지, <https://www.hcch.net/en/states/authorities/details3/?aid=1147> (2021. 6. 17. 방문) 참조. 이하

## 2. 촉탁서에 의한 증거조사

### 가. 중앙당국의 지정

체약국의 사법당국은 자국법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촉탁서로써 증거수집<sup>146)</sup>이나 기타 사법적 행위<sup>147)</sup>의 이행을 촉탁할 수 있다(증거협약 제1조 제1항). 촉탁서에 의한 증거조사 방식은 종래 민사소송협약에 따른 전통적인 간접실시방식인데, 증거협약은 송달협약을 따라 여기에 중앙당국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체약국은 촉탁서를 수령하고 집행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할 중앙당국을 지정해야 한다(증거협약 제2조 제1항).<sup>148)</sup> 베트남은 송달협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무부를 중앙당국으로 지정하였다.<sup>149)</sup> 증거협약 제2조 제2항은 “촉탁서는 집행국의 기타 당국을 경

---

“베트남 증거협약 실무정보”로 인용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실무정보는 유효한 대항입법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Korea, Republic of - Central Authority & Practical Information”, 헤이그회의의 웹사이트, <https://www.hcch.net/en/states/authorities/details3/?aid=846> (2021. 6. 17. 방문) 참조. 이하 “한국 증거협약 실무정보”로 인용한다.

146) 증거협약은 ‘증거수집’을 정의하지 않지만, 제3조가 규정하는 촉탁서의 기재사항을 보면 사람에 대한 신문, 서류·부동산·동산에 대한 검사 등이 증거수집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증거협약 제3조 제e호, 제f호, 제g호).

147) ‘기타 사법적 행위’라는 표현은 민사소송협약(제8조)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는 체약국의 수소법원의 사물관할 내에 속하는 사항이라 직접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체약국의 사법고권에 의한 제약으로 인하여 직접 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가령 출생증명서 사본의 확보, 공부의 등본의 획득, 재산의 임시관리인의 선임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논의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영국에서는 공부의 등본의 획득은 사법적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 석광현(註1), 263면. ‘기타 사법적 행위’는 법원의 권한 내에서 실행되는 행위이므로,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화해나 교섭을 위한 증거조사 촉탁은 ‘기타 사법적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촉탁은 증거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 Lê Mạnh Hùng, Đỗ Ngọc Thanh(註141) 참조. 증거협약 제1조 제3항에 따라, 재판상 서류의 송달, 판결이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영장의 발부, 임시조치 또는 보호조치 명령은 ‘기타 사법적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48) 체약국은 중앙당국 외에 기타 당국을 그 권한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촉탁서는 모든 경우에 중앙당국으로 송부될 수 있다(증거협약 제24조 제1항). 연방국가는 둘 이상의 중앙당국을 지정할 수 있다(증거협약 제24조 제2항). 둘 이상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은 그 법체계 중 하나의 당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당국은 증거협약에 따라 촉탁서를 집행할 배타적 권한을 갖는다(증거협약 제25조).

149) 우리나라도 송달협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를 중앙당국으로 지정하였다.

유하지 않고 집행국의 증양당국으로 송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촉탁서의 송부에 낭비적인 외교경로가 개입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sup>150)</sup>

#### 나. 촉탁서의 송부

증양당국은 촉탁의 수령기관이지 송부기관이 아니다. 촉탁서는 촉탁국의 사법당국이 발행한다(증거협약 제1조 제1항). 그러나 증거협약은 ‘사법’을 정의하지 않는다. 베트남의 사법당국은 합동시행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법촉탁 권한을 가진 기관들인데, 구체적으로 최고인민법원, 고등인민법원, 성급인민법원, 성급민사판결집행기관, 최고인민검찰원, 고등인민검찰원, 성급인민검찰원,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이다. 다만 합동시행규칙(제13조)은 법무부가 이러한 기관들로부터 사법촉탁을 수령하여 주요경로, 외교경로, 간접외교경로, 간접영사경로를 통하여 수탁국으로 송부하도록 규정한다. 즉, 베트남에서 촉탁서는 사법당국이 일단 법무부로 송부하고, 법무부가 이를 수탁국의 증양당국으로 전달한다.<sup>151)</sup>

촉탁서에는 증거협약 제3조가 규정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sup>152)</sup> 특히 소송당사자와 소송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촉탁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는 “촉탁서는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예정인 소송절차에서 사용할 의도가 없는 증거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증거협약 제1조 제2항을 보완하는 것이다. 송달협약과 달리 증거협약은 촉탁서 양식을 부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1978년 특별위원회는 촉탁서 모델 양식을 작성하여 사용을 권고하였고,<sup>153)</sup> 1985년 특별위원회는 이를 일부 개선하였다.<sup>154)</sup>

150) 석광현(註1), 265면.

151) 베트남 증거협약 실무정보(註145) 참조.

152) 구체적으로 ① 촉탁당국과 수탁당국(촉탁당국이 알고 있는 경우), ② 소송당사자와 대리인(있는 경우)의 성명과 주소, ③ 증거가 요청되는 소송절차의 성격과 이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④ 취득할 증거 또는 이행할 기타 사법적 행위, ⑤ 신문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 ⑥ 신문받을 자에게 할 질문 또는 신문이 이루어질 소송물에 관한 설명, ⑦ 검사될 서류, 부동산, 동산, ⑧ 증거가 선서나 서약에 의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요건과 사용될 특별한 형식, ⑨ 증거협약 제9조에 따라 준수되는 특별한 방식이나 절차, ⑩ 증거협약 제11조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증거협약 제3조).

153)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port on

촉탁서는 수탁당국의 언어로 작성되거나 그 언어로 된 번역문<sup>155)</sup>을 첨부하여야 한다(증거협약 제4조 제1항). 그러나 체약국은 협약의 서명, 비준, 가입 시에 유보하지 않으면, 영어나 불어로 작성된 촉탁서 또는 영어나 불어로 번역된 촉탁서를 접수해야 한다(증거협약 제4조 제2항 및 제33조 제1항). 베트남은 촉탁서가 베트남어로 작성되거나 베트남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영어나 불어로 작성된 촉탁서 또는 영어나 불어로 번역된 촉탁서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유보하였다.<sup>156)</sup>

중앙당국은 촉탁서를 수령하면 이를 집행할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해야 한다. 촉탁서를 송부받은 당국에 이를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 촉탁서는 권한 있는 당국에 지체 없이 송부돼야 한다(증거협약 제6조). 베트남 합동시행규칙(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의 사법촉탁을 집행할 권한 있는 당국은 성급인민법원, 성급민사판결집행기관, 집행관이다.

#### 다. 촉탁의 집행

##### 1) 당사자, 대리인이나 촉탁당국 법관의 증거조사 출석

증거협약(제7조)에 따르면, 촉탁당국이 희망하는 경우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가 진행될 일시와 장소를 촉탁당국에 통지해야 하고, 촉탁당국이 요청한다면 이를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직접 통지해야 한다. 베트남에서는 중앙당국인 법무부가 촉탁당국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

the Work of the Special Commission on the Operation of the Convention of 18 March 1970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1978. 6., p. 7.

154)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port on the Work of the Special Commission of May 1985 on the Operation of the Convention, 1986. 9., p. 4. 증거협약 촉탁서 모델 양식은 헤이그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assets.hcch.net/docs/5407462f-6e0c-4da9-a316-73b554a8eef4.pdf> (2021. 6. 17. 방문) 참조.

155) 촉탁서에 첨부되는 모든 번역문은 외교관이나 영사관원, 선서한 번역자 또는 각국에서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하여 정확하다고 확인되어야 한다(증거협약 제4조 제5항).

156) 우리나라는 한국어 또는 영어 촉탁서만 접수하고, 한국어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촉탁서의 집행은 지체될 수 있으며,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촉탁서만 접수하는 체약국으로부터는 한국어 촉탁서만 접수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였다.

나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베트남은 신속한 통지를 위하여 촉탁서에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할 것을 권고하였다.<sup>157)</sup>

체약국은 촉탁당국의 법관이 촉탁서의 집행 시에 출석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선언국이 지정하는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사전승인이 요구될 수 있다(증거협약 제8조). 이는 외국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직접심리주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sup>158)</sup> 다만 당사자와 달리 외국 법관의 증거조사 출석은 주권에 관련될 수 있으므로, 체약국이 가능하다고 선언한 경우에만 촉탁국의 법관이 증거조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촉탁당국의 법관이 법원행정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촉탁서 집행 시에 출석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은 제8조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촉탁당국의 법관이 증거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

## 2) 집행의 준거법

수탁당국은 촉탁서 집행의 방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수탁국법을 적용한다(증거협약 제9조 제1항). 이는 촉탁서 집행을 위한 강제력의 사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증거협약 제10조). 그러나 촉탁당국은 특별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으며,<sup>159)</sup> 수탁당국은 이러한 요청이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국내의 관행, 절차 또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행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따라야 한다(증거협약 제9조 제2항).<sup>160)</sup>

촉탁당국이 비디오링크에 의한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2009년 특별위원회 결론 및 권고는 외국에서의 증거조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비디오링크나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협약의 현행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았다.<sup>161)</sup> 베트남 정부는 비디오링크 사용에 대한 법적 장

157) 베트남 증거협약 실무정보(註145) 참조.

158) 석광현(註1), 267면.

159) 촉탁서의 집행으로 발생한 비용은 상환의 대상이 아니지만, 집행국은 촉탁국이 요청한 특별한 절차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증거협약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160)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단순히 국내법과 상이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촉탁당국의 요청이 수탁국의 헌법이나 절대적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 요청의 이행불능 여부는 결국 수탁당국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국제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재량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석광현(註1), 268면.

에는 없으나, 아직 이에 대한 국내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디오링크를 사용한 촉탁의 집행은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sup>162)</sup>

### 3) 강제력의 사용

중앙당국을 통한 증거조사는 수탁국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탁당국은 촉탁서를 집행할 때, 자국당국의 명령이나 국내소송당사자의 신청을 집행하는 경우에 국내법이 정한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강제력을 사용해야 한다(증거협약 제10조). 베트남 민사소송법은 증거 수집 및 확인을 방해하는 행위(제489조), 법원의 소환을 받고 고의로 불출석하는 행위(제490조), 타인의 법원 회기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제494조), 법원의 문서·증거 제출 결정에 불응하는 행위(제495조) 등에 대하여 사안의 성질과 정도에 따른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베트남 법원은 촉탁서 집행에 상응하는 국내소송의 경우를 참조하여 강제력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4) 관계자의 증거제출 거부

관계자는 수탁국법이나 촉탁국법에 의하여 증거제출을 거부할 특권이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증거협약 제11조 제1항).<sup>163)</sup> 이처럼 신문을 받을 자는 증거제출 거부의 근거로 수탁국법이나 촉탁국법

161) 특별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① 협약은 수탁국이 촉탁서를 집행할 때 물리적 출석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디오링크를 통하여 당사자 및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고(제7조) 촉탁국의 법관이 출석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제8조). ② 협약은 수탁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촉탁서의 집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비디오링크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제9조 제1항). ③ 제9조 제2항에 따라 촉탁서의 집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비디오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협약은 외교관, 영사관원이나 수임인의 증거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디오링크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이는 집행국이 그러한 실무를 금지하지 않고 관련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2009년 특별위원회 결론 및 권고(註139), para. 55. 그러나 비디오링크에 의한 증거조사는 물리적으로는 법정지에 있지만 관념적으로는 집행지에 출석하는 것처럼 의제하는 형태이므로, 물리적인 실재를 관념적인 것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가령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감지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오병희, “국제민사사법공조에 있어서의 영상전송(video-link)에 의한 증거조사 - 헤이그 증거협약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0집(2010), 501면.

162) 베트남 증거협약 실무정보(註145) 참조. 한편 우리나라는 실무정보에서 비디오링크에 의한 증거조사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 증거협약 실무정보(註145) 참조.

163) 증거협약 제11조의 증거제출거부권은 민사소송협약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을 선택할 수 있다.<sup>164)</sup> 베트남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언거부권<sup>165)</sup>이나 증언무능력<sup>166)</sup>도 ‘증거제출을 거부할 특권’에 포함된다.

그 밖에도 계약국은 선언에서 명시한 범위에서 촉탁국과 집행국이 아닌 제3국의 법에 의한 특권과 의무를 존중할 것이라는 선언을 할 수 있다(증거협약 제11조 제2항). 베트남은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않았으므로,<sup>167)</sup> 베트남에서 제3국법에 의한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5) 기일 전 서류개시

계약국은 서명, 비준, 가입 시에 보통법 국가에서 ‘기일 전 서류개시(pre-trial discovery of documents)’를 목적으로 작성된 촉탁서를 집행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증거협약 제23조). 이는 특정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제소 후 변론 전에 하는 영미법계의 기일 전 개시를 목적으로 하는 촉탁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sup>168)</sup>

증거협약 제23조에 따른 선언에는 전면적 거부선언과 제한적 거부선언이 있다. 2003년 특별위원회 결론 및 권고는 기일 전 서류개시 촉탁서의 집행에 대하여 전면적 거부선언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영국의 선언과 같이 집행을 거부하는 촉탁서에 대하여 상술하는 방법과,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미주협약의 1984년 추가의정서」<sup>169)</sup>(이하 “미주의정서”) 제16조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촉탁서를 집행한다고 선언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sup>170)</sup>

164) 증거협약의 다른 곳에서는 소송절차에 관하여 국제사법상 널리 인정되는 법정지 법원칙이 타당하나, 여기에서는 ‘증인의 최혜원칙’이 타당하다. 다만 증언거부의 적법 여부는 촉탁국의 수소법원이 아니라 수탁국의 법원이 결정하는데, 실무상 수탁국의 법관이 외국법에 따른 증언거부권의 범위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석광현(註1), 271면.

165) 민사소송법 제78조 제3항은 증인의 권리의무 중의 하나로 증언거부권을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증인은 증언이 국가기밀, 업무비밀, 영업비밀, 개인비밀, 가족비밀에 해당하거나, 증언이 가까운 친척인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66) 민사소송법 제77조 제2문은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67) 우리나라도 증거협약 제11조 제2항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않았다.

168) 석광현(註1), 277면.

169) 미주의정서의 영문명은 「Additional Protocol of 1984 to the 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이다.

베트남은 아래와 같이 미주의정서 제16조에 규정된 조건을 원용하면서,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기일 전 서류개시 촉탁서만 집행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였다.<sup>171)</sup>

협약 제23조에 따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영미법계 국가에서 기일 전 서류개시로 알려진 바를 목적으로 하는 촉탁서를 집행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 권한 있는 법원에서 사법 절차가 개시되었을 것
- 촉탁서에 수집하고자 하는 서류들의 일자, 제목, 모색하고자 하는 정보와 계속 중인 절차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관련 정보 및 사실을 특정할 것
- 서류들이 요청을 받은 자와 관련되거나 그의 점유 또는 권한 하에 있을 것

#### 6) 집행의 거부

중앙당국은 촉탁서가 증거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를 명시하여 촉탁당국에 통지한다(증거협약 제5조). 또한 집행국에서 촉탁서의 집행이 사법부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않거나, 촉탁서의 집행이 수탁국의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촉탁의

170)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Special Commission on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Hague Apostille, Evidence and Service Conventions, 2003. 11., paras. 29-34 참조.

171)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영국식의 제한적 거부선언을 하였다. “제23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기일 전 서류개시절차의 목적으로 작성된 촉탁서를 집행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위에서 한 선언과 관련하여 ‘기일 전 서류개시절차의 목적으로 작성된 촉탁서’란 어떤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선언한다. 가. 촉탁서에서 언급된 소송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가 그의 점유, 보관 또는 권한 하에 있는지 또는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 나. 촉탁서에 명시된 특정한 서류 이외의 서류로서 촉탁을 받은 법원이 판단하기에, 그의 점유, 보관 또는 권한 하에 있거나 또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의 제출.” 그러나 이러한 장치도 미국법원의 실무에서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미국 연방대법원(*Aérospatiale* 사건 판결)은 증거협약을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지 않고 단지 증거수집을 위한 부가적인 제도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영재, 김용진, “국제민사사법공조와 미국과의 사법마찰 - 헤이그송달협약 및 헤이그증거조사협약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2011), 383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증거협약 제12조 제1항). 그러나 송달협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탁국은 국내법에 따라 소송물에 대하여 전속관할권을 가진 다거나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증거협약 제12조 제2항).

#### 라. 증명서의 송부

수탁당국은 촉탁당국이 이용한 경로를 통하여, 촉탁서를 집행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송부하고, 촉탁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통지한다(증거협약 제13조). 증거협약은 촉탁을 집행하는 언어나 촉탁서의 집행을 입증하는 서류의 언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으나,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언어로 작성되는 것이 통상일 것이다.<sup>172)</sup>

### 3. 외교관, 영사관원 및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

민사소송협약과 비교한 증거협약의 본질적 개선점은 외교관, 영사관원 및 수임인<sup>173)</sup>에 의한 증거조사를 규정한 제II장(제15조 내지 제22조)의 도입이다. 외교관, 영사관원 및 수임인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은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외국 당국의 개입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촉탁서에 의한 간접 실시방식에 비하여 간편하고 신속하다. 또한 촉탁서에 의한 간접실시방식은 집행국법을 따르지만, 직접실시방식의 경우 법정지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다는 점이 다르다(증거협약 제21조 제d호).

외교관, 영사관원의 증거조사 권한은 증인의 국적에 따라 다르다. 외교관, 영사관원은 다른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자국민에 대하여 강제력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지만, 체약국은 지정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선언할 수 있다(증거협약 제15조). 한편 외교관, 영사관원은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를 받고 접수국이 부과하는 조건을 준

172) 석광현(註1), 271면.

173) 수임인(commissioner)에 의한 증거조사는 전형적인 영미법계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수임인은 촉탁국이나 집행국의 사법당국이 지정할 수 있으나, 비사법당국(사인, 영사 등)이 수임인을 지정할 수는 없다. 외교관, 영사관원의 증거조사는 자신의 직무수행 지역 안에 한정되나(증거협약 제16조 제1항), 수임인의 경우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석광현(註1), 274면.

수한 경우 접수국의 영토 내에서 접수국 또는 제3국 국민에 대하여 강제력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지만, 체약국은 선언에 의하여 사전 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증거협약 제16조).

나아가 수임인은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를 받고 접수국이 부과하는 조건을 준수한 경우 접수국의 영토 내에서 강제력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증거협약 제17조 제1항). 다만 체약국은 선언에 의하여 사전 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증거협약 제17조 제2항). 즉, 수임인에 대해서는 외교관, 영사관원이 접수국 또는 제3국 국민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구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체약국은 외교관, 영사관원 또는 수임인이 강제력에 의하여 증거를 취득하기 위하여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적절한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고, 적절한 조건을 선언에 포함시킬 수 있다(증거협약 제18조 제1항). 외교관, 영사관원 및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는 촉탁서에 의한 방식에 비하여 간편하고 신속하지만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체약국이 선언을 통해 증거조사가 실시될 국가에 강제력의 원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sup>174)</sup>

증거협약은 외교관, 영사관원 및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에서 피신문자나 기타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건 부과(제19조)<sup>175)</sup>, 법적 대리(제20조)<sup>176)</sup>, 통지 의무(제21조 제c호)<sup>177)</sup>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어느 국가든지 서명, 비준, 가입 시에 제III장의 규정의 적용을 전

174) 그러나 이러한 신청이 수용되어 강제력이 실제로 부여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강제력의 부여는 전적으로 집행국의 권한과 통제에 따른다. 석광현(註1), 275면.

175) 증거협약 제19조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언급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또는 제18조에 언급된 강제력의 원조의 신청을 허가함에 있어서, 권한 있는 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특히 증거조사 실시의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권한 있는 당국은 증거조사 실시의 시간, 일자 및 장소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사전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당국의 대표는 증거조사 실시에 출석할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한다.

176) 외교관, 영사관원 또는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에 있어서 관계자는 법적으로 대리될 수 있다(증거협약 제20조).

177) 증거협약 제21조 제c호에 따르면, 촉탁서에는 수취인이 법적으로 대리될 수 있으며 제18조에 의한 선언을 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출석이나 증거제출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부 또는 일부 배제할 수 있다(증거협약 제33조 제1항). 베트남은 협약 제II장의 규정을 전부 배제하는 선언을 하였다. 미국을 제외한 많은 체약국들이 주권침해를 우려하여 제II장에 대해 이의를 하였는데,<sup>178)</sup> 베트남도 같은 이유에서 제II장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증거협약에 따라 외국의 외교관, 영사관원 및 수임인이 직접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이 다른 체약국에서 파견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sup>179)</sup> 이러한 협약에 따라 외교관 등이 베트남에서 자국민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증거협약 제II장 제16조 및 제1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sup>180)</sup>

#### 4. 간이한 증거조사

송달협약은 체약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우편에 의한 송달, 사법공무원 간의 직접 송달 등 간이한 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송달협약 제10조). 그러나 증거협약에 따르면, 협약이 정한 방식보다 간이한 증거조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탁국의 일방적 선언이 있거나(제27조 제a호), 수탁국의 국내법이나 관행(제27조 제b호 및 제c호), 체약국 간의 합의(제28조 제a호), 다자조약(제32조)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sup>181)</sup>

178) 석광현(註1), 272면.

179) 석광현(註1), 272면.

180) 참고로 우리나라는 1963. 12. 19. 조약 제121호로써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영사협약」(제4조 제c호)에 따라 미국의 영사가 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제3국 국민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송달협약 제1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사관원은 양자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한국인 또는 제3국 국민에 대하여 강제력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석광현(註1), 273면 이하.

181) 베트남 증거협약 실무정보는 베트남이 17개국과 민상사사법공조 양자조약이 체결된 사실을 언급하지만, 이러한 양자조약들이 모두 간이한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증거협약 실무정보(註145) 참조.

## 5. 소결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종래에 국내법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하여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었다. 한국과 베트남이 증거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양국은 중앙당국을 통하여 더욱 신속한 촉탁의 집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증거협약과 국내법의 관계(즉, 증거협약의 강행성)에 관하여서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논란이 있다.

촉탁서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촉탁당국 법관의 증거조사 출석(제8조)을 법원행정처의 사전승인을 전제로 허용한 반면에, 베트남이 이를 불허한 것은 특히 외국 법관이 비디오토크에 의하여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한다는 점에서 아쉽다. 한국과 베트남이 외교관, 영사관원에 의한 접수국 또는 제3국 국민에 대한 증거조사(제16조)와 수입인에 의한 증거조사(제17조)를 전면 거부한 것도 전향적이지 못하다.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선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양국의 증거협약에 따른 국제민사사법공조 제도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베트남	한국
촉탁서에 의한 증거조사	중앙당국 (제2조 제1항)	법무부	법원행정처
	촉탁서 언어 (제4조 제2항)	베트남어	한국어, 영어
	촉탁당국 법관의 증거조사 출석 (제8조)	불허	허용 (사전승인 필요)
	제3국법에 의한 특권 (제11조)	불허	불허
	기일 전 서류개시 (제23조)	제한적 거부	제한적 거부
외교관, 영사관원, 수입인에 의한 증거조사	외교관, 영사관원에 의한 자국민 증거조사 (제15조)	반대	허용
	외교관, 영사관원에 의한 자국민 외 증거조사 (제16조)	반대	반대
	수입인에 의한 증거조사 (제17조)	반대	반대

증거협약에 따라 베트남에 촉탁서를 송부할 때에는 실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베트남어로 작성되거나 번역된 촉탁

서만 접수한다.<sup>182)</sup> 증거협약(제3조 제f호)은 촉탁서에 ‘신문받을 자에게 할 질문 또는 신문이 이루어질 소송물에 관한 설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베트남은 판사가 촉탁을 이해하고 집행하려면 촉탁서가 충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므로 질문과 소송물을 모두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베트남 사법당국은 촉탁서에서 이의제기 가능한 질문이나 공격적인 표현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등 촉탁서를 수정(blue-pencil)할 수 있다.<sup>183)</sup> 한편 증거협약 제7조에 따라 촉탁서 집행 일시와 장소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베트남은 통지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촉탁서에 당사자와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제3조 제b호)뿐만 아니라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였다. 베트남에서 증거협약에 따른 촉탁의 집행기간은 평균적으로 지방 법원이 촉탁서와 첨부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약 6개월이다.<sup>184)</sup>

촉탁서에 의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베트남 법원은 주로 법정이나 증인의 주소지에서 증거수집을 하므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가 절차에 대하여 인식하거나 이에 참석하기는 어렵다. 증인은 증언의 기록방식으로 통상 진술서(affidavit)나 녹취록(법원 서기나 판사가 작성)을 선택할 수 있다. 구술 증언은 외국 당국이 요청하고 그것이 적절한 경우에 기타 방식으로 기록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증인은 특히 진술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촉탁서상 질문과 소송물의 사본을 제공받고 질문 밑에 답변을 작성하게 된다. 베트남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인이 작성한 문서를 인증하지 않으나, 증인이 법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증인의 요청에 따라 인증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증인은 재소환할 수 없으며, 추가 증언을 위하여 재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두 번째 촉탁을 제공해야 한다.<sup>185)</sup>

182) 우리나라는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촉탁서만 접수하는 체약국으로부터는 한국어 촉탁서만 접수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였으므로, 베트남이 한국어로 송부하는 촉탁서도 한국어로 작성되거나 번역되어야 한다.

183) 우리나라 역시 번역의 오류를 교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수정하거나 이의제기 가능한 질문 또는 공격적인 표현을 고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 근거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92조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한국 증거협약 실무정보(註145) 참조.

184) 베트남 증거협약 실무정보(註145) 참조.

185) 베트남 증거협약 실무정보(註145) 참조. 한편 우리나라는 증인에 대한 추가신문과 재소환이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한국 증거협약 실무정보(註145) 참조

증거협약과 관련하여서는 베트남 법무부 국제법률국 부국장과 전화(+84 24 62739451), 이메일(mlvietnam@moj.gov.vn, haguevietnam@moj.gov.vn)로 연락할 수 있으며 베트남어와 영어가 가능하다.<sup>186)</sup>

## VI. 한베조약에 관한 제언

베트남의 민사사법공조는 국내법, 양자조약, 다자조약의 틀에서 실시되는데, 국내법에 대해서는 조약이 우선하고,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은 양립한다. 그러나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베트남 정부는 사법공조 실무상 양자조약의 적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오래전부터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을 체결하고자 준비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제 양국은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의 체결국으로서 이러한 다자조약에 따라 사법공조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에 가입하면서 각기 다양한 규정의 적용을 유보하여 사법공조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였다.<sup>187)</sup> 향후에 가칭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베조약”)이 체결된다면 적어도 양국 간에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한베조약에 규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제안한다.<sup>188)</sup>

186) 2021. 6. 17. 현재 베트남 법무부 국제법률국 부국장은 Ms. Phạm Hồ Hương이다. 베트남 증거협약 실무정보(註145) 참조.

187) 김용진, “외국송달의 운영시스템과 그 개선방안”,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2012), 510면 이하는, 송달협약은 영미법계 국가의 당사자송달주의와 대륙법계 국가의 직권송달주의의 타협의 산물로서 핵심적인 송달방식에 대한 유보선언을 허용하는데, 대륙법계 국가의 대부분이 실제로 유보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진전된 송달방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호주, 중국, 몽골과 체결한 민사사법공조조약도 송달협약이 인정하는 공조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188) 법원행정처 국제규범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민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민사사법공조조약 모델안을 제정하였고, 실제로 이 모델안을 토대로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 성안되어 체결되었으며, 이후의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 협상에서도 이 모델안이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오병희(註161), 485면, 각주 53번. 이 글에서 한베조약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 내용은 대부분 민사사법공조조약 모델안에는 규정되지 않은 것이다.

한베조약은 송달 및 증거조사 등과 관련하여 중앙당국을 지정하고, 중앙당국이 촉탁서의 수령기관이자 송부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에서 중앙당국은 수령기관이지 송부기관이 아니다. 베트남은 협약에 가입하면서 사법공조법상 송부기관인 법무부를 중앙당국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협약상 중앙당국으로 법원행정처를 지정하였지만,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송부기관은 여전히 외교부이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중앙당국이 수령기관과 송부기관의 역할을 겸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양자조약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송달협약은 간이한 송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0조 제a호는 우편에 의한 송달에 대하여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우편에 의한 송달에 대하여 이의하였지만, 베트남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을 것을 전제로 이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은 베트남에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있으나, 상호주의에 따라 실무상으로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메일과 같은 현대적 기술이 우편에 의한 송달과 결합하여 전자우편송달(electronic postal mail services)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sup>189)</sup> 한베조약은 우편에 의한 송달을 허용하고, 나아가 이메일과 같은 현대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참고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헝가리간의 민사사법공조조약」(제10조 제5항)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달을 규정하고 있다.<sup>190)</sup>

송달협약 제9조 제1항은 영사관원을 통해 목적지국의 지정당국으로 하는 간접적인 송달방식에 대해 규정한다. 베트남은 중앙당국과 마찬가지로 법무부를 당국으로 지정하였지만, 한국은 이러한 당국을 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영사경로를 통한 간접송달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양한 송달경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간접영사경로가 외교경로를 통한 송달보다 간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중앙당국과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를 당국으로 지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다.<sup>191)</sup> 한베

189) 법원행정처(註78), 265면 이하 참조.

19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헝가리간의 민사사법공조조약(Hiệp định tương trợ tư pháp trong lĩnh vực dân sự giữa nước Cộng hoà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và Hung-ga-ri)」(2018. 9. 10. 서명, 2019. 3. 6. 발효) 제10조 제5항은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법률 규정과 실제 조건에 따라 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달(e-service)을 촉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조약은 양국 간에 영사경로를 통한 간접송달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송달촉탁이 중앙당국을 통한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는 않겠으나, 베트남은 당사자가 국가나 외국정부기관인 특별한 경우에는 간접영사경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협약 제8조는 촉탁서의 집행과 관련하여, 촉탁당국의 법관이 수탁국의 증거조사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한국은 법원행정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석이 가능하다고 선언하였지만, 베트남은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않았다. 증거협약 제8조는 비디오링크에 의한 증거조사와 관련이 있다. 한베조약이 촉탁국의 법관이 적어도 지정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국 증거조사에 출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COVID-19 사태와 같이 촉탁국의 법관이 물리적으로 집행국에 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에 근거하여 비디오링크에 의한 증거조사를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영상전송에 의한 증거조사 자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제19조 제1항 제나호)은 영상전송에 의한 증거조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증거협약 제II장은 외교관, 영사관원 및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베트남은 제II장 전체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우리나라는 제16조와 제17조의 적용을 유보하였다. 증거협약 제15조가 규정하는 외교관, 영사관원의 자국민에 대한 증거조사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이미 허용된 것이므로, 그 체약국인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양자조약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증거협약 제16조에 따른 외교관, 영사관원의 접수국 또는 제3국 국민에 대한 증거조사는 증거법의 영역에서 국제공조를 현저하게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다자조약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어려웠더라도, 긴밀한 사법공조가 요구되는 양국 간의 양자조약에서는 이처럼 경직된 태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증거협약(제19조 내지 제21조)에 마련된 안전장치를 한베조약에 함께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증거협약 제17조의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는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과 베트남의 양자조

191) 석광현(註45), 306면.

약에 반영할 실익이 작다.<sup>192)</sup>

이 밖에도 우리나라가 기존에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조약<sup>193)</sup>을 참조하면 법률정보 및 소송기록의 제공, 법률구조, 인증 면제, 외교경로 이용권 등에 관한 규정을 한베조약에 반영할 수 있다. 나아가 상대국 법원 판결의 공정성과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제고된다면, 한베조약에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sup>194)</sup>

---

192) 우리나라가 영미권계 국가인 호주와 체결한 한호조약은 수입인에 의한 증거조사(제25조)를 규정하고 있다.

193) 우리나라가 2021. 6. 현재 호주,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5개국과 체결한 민사사법공조조약은 법률구조(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외교경로 이용권(호주,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인증 면제(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법률정보 및 소송기록의 제공(호주,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194) 베트남에서 외국재판이 승인 및 집행되는 경우는 ① 베트남과 상대국이 가입한 조약에서 규정한 경우, ②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경우, ③ 기타 베트남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이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제1항). 베트남은 2017년 현재 다수의 국가들(체코슬로바키아, 쿠바, 헝가리, 불가리아, 폴란드, 러시아, 라오스, 중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몽골, 벨라루스, 알제리, 카자흐스탄, 캄보디아)과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였다. 베트남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판결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실제로 베트남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다. Adeline Chong (Edit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Asia, Asian Business Law Institute, 2017, p. 212 이하 참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제217조 제1항 제4호)은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효정, 장지용,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137면은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에는 이러한 상호보증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다. 한편 양국은 양자조약과 별도로, 헤이그회의가 2019. 7. 2. 채택한 「민사 또는 상사에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2019. 7. 2. 협약(Convention of 2 July 2019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이하 “재판협약”)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판협약은 일정한 간접관할의 근거를 충족하는 체약국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규정하고(제5조), 승인 및 집행을 거부사유를 망라적으로 열거한다(제7조). 석광현,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주요 내용과 간접관할규정”,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2호(2020), 71면 이하는, 재판협약은 직접관할규칙을 담아 내지 못하고 제외되는 사항이 많아 큰 성공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재판협약이 가져올 수 있는 실제적 효용을 고려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 VII. 맺음말

이 글에서는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현황을 개관하고, 베트남 사법공조법과 송달협약, 증거협약에 초점을 맞추어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제도를 검토하였다. 베트남은 사법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사법공조조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할 것을 당과 국가의 정책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에 이어 베트남이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양국 간에 민사사법공조의 법적 기초가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 양국이 양자조약을 체결하거나 다자조약상 유보를 철회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법공조의 수준을 제고하는 일은 과제로 남아 있다.

베트남이 헤이그회의에 가입한 지는 아직 채 십 년이 되지 않았다. 베트남 총리는 헤이그회의 회원국으로서 자국의 수요와 조건에 최적으로 부합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주요 헤이그협약에 점진적으로 가입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베트남이 가장 먼저 가입을 추진한 협약이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이다. 현재 베트남은 총리의 지시에 따라 탈취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포스티유협약<sup>195)</sup>을 비롯한 다른 헤이그협약에 대한 가입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베트남이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에 따라 충실하게 실무를 처리하고, 헤이그회의 회원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

195) 헤이그회의가 진행한 아포스티유협약 2021. 1. 설문에 따르면, 베트남은 e-APP의 실행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 때문에 아직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약의 당사국이 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Vietnam Apostille Questionnaire 2021”, 헤이그회의의 웹페이지, <https://assets.hcch.net/docs/3987cae1-5f9c-4cbb-b158-53d937c40ad4.pdf> (2021. 6. 17. 방문) 참조.

## [첨부 1] 베트남의 송달협약 유보 및 선언

1. 법무부를 송부기관 및 협약 제2조에 따른 중앙당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협약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권한 있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2. 협약 제8조에 규정된 송달방식은 문서를 송부국 국민에게 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지 않는다.
3. 협약 제10조 제b호 및 제c호의 송달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4. 협약 제10조 제a호의 우편경로를 통한 송달방식은 문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부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적용한다.
5. 협약 제15조 제2항을 적용한다.
6. 베트남으로 송부하는 양식에 따른 송달 촉탁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거나 베트남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송달될 외국 문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거나 번역자 서명이 공증 또는 인증된 베트남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지만, 협약 제8조 및 제10조 제a호에 규정된 송부국 국민인 당사자에 대한 직접외교·영사경로를 통한 송달이나 송부국 국민인 당사자에 대한 우편경로를 통한 송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Chi định Bộ Tư pháp là cơ quan gửi giấy tờ và Cơ quan Trung ương theo Điều 2 Công ước, đồng thời là cơ quan có thẩm quyền theo Điều 6 và Điều 9 Công ước.
2. Không áp dụng phương thức tổng đạt quy định tại Điều 8 Công ước trừ khi giấy tờ được tổng đạt cho công dân của quốc gia gửi.
3. Không áp dụng các phương thức tổng đạt tại đoạn b và c Điều 10 Công ước.
4. Áp dụng phương thức tổng đạt qua đường bưu điện tại đoạn a Điều 10 Công ước với điều kiện giấy tờ được gửi qua thư đảm bảo.
5. Áp dụng đoạn 2 Điều 15 Công ước.
6. Yêu cầu tổng đạt theo mẫu gửi đến Việt Nam phải được lập bằng hoặc kèm theo một bản dịch bằng tiếng Việt. Các giấy tờ của nước

ngoài được tổng đạt tại Việt Nam phải được lập bằng hoặc kèm theo một bản dịch bằng tiếng Việt có công chứng hoặc chứng thực chữ ký người dịch, trừ trường hợp tổng đạt qua kênh ngoại giao, lãnh sự trực tiếp cho đương sự là công dân nước gửi hoặc tổng đạt qua kênh bưu điện cho đương sự là công dân nước gửi quy định tại Điều 8 và đoạn a Điều 10 Công ước.

## [첨부 2] 베트남의 증거협약 유보 및 선언

1. 협약 제2조에 따라, 법무부를 중앙당국으로 지정한다.
2. 협약 제33조에 따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협약 제4조 제2항 및 제 II장의 규정 전부를 유보한다.
3. 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촉탁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거나 베트남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4. 협약 제23조에 따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영미법계 국가에서 기일 전 서류개시로 알려진 바를 목적으로 하는 촉탁서를 집행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 권한 있는 법원에서 사법 절차가 개시되었을 것
  - 촉탁서에 수집하고자 하는 서류들의 일자, 제목, 모색하고자 하는 정보와 계속 중인 절차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관련 정보 및 사실을 특정할 것
  - 서류들이 요청을 받은 자와 관련되거나 그의 점유 또는 권한 하에 있을 것

1. Theo Điều 2 Công ước, chỉ định Bộ Tư pháp là Cơ quan Trung ương.
2. Theo Điều 33 Công 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bảo lưu toàn bộ các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4 và Chương II Công ước.
3. Theo khoản 1 Điều 4 Công 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tuyên bố văn bản yêu cầu phải lập bằng tiếng Việt hoặc kèm theo bản dịch tiếng Việt.
4. Theo Điều 23 Công 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tuyên bố không thực hiện Văn bản yêu cầu để thu thập chứng cứ là các tài liệu liên quan trước khi diễn ra phiên tòa như được biết đến ở các nước theo hệ thống thông luật, trừ khi đáp ứng toàn bộ các điều kiện sau:
  - vụ việc đã được tòa án có thẩm quyền thụ lý;

- tài liệu cần thu thập phải được xác định cụ thể trong yêu cầu về ngày, tháng, chủ đề và nội dung thông tin liên quan và tình tiết chứng minh thông tin được tìm kiếm liên quan trực tiếp đến vụ việc được nêu;
- tài liệu liên quan đến người được yêu cầu hoặc do người đó nắm giữ, sở hữu.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용진, “외국송달의 운영시스템과 그 개선방안”,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2012).
- 김효정, 장지용,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 법원행정처, 국제거래재판실무편람, 2006.
- \_\_\_\_\_, 헤이그송달협약 실무편람, 2018.
- 서영제, 김용진, “국제민사사법공조와 미국과의 사법마찰 - 헤이그송달협약 및 헤이그증거조사협약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2011).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박영사, 2001.
- \_\_\_\_\_, “헤이그증거협약 가입을 환영하며”, 법률신문(2010. 1. 1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38598>
- \_\_\_\_\_,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사법(절차편), 박영사, 2012.
- \_\_\_\_\_,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한국의 가입”,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2호(2013).
- \_\_\_\_\_, “한중 사법공조의 실천현황과 개선방안”, 국제거래법연구, 제23권 제2호(2014).
- \_\_\_\_\_, “한국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가입 2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거래와 법, 제19호(2017).
- \_\_\_\_\_,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주요 내용과 간접관할규정”,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2호(2020).
- 양병희, “국제사법공조로서의 외국송달에 관한 소고”, 민사소송, 제3권(2002).
- 오병희, “국제민사사법공조에 있어서의 영상전송(video-link)에 의한 증거조사 - 헤이그 증거협약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0집(2010).
- 이준현,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 활동과 일본 -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6권 1호(2008).
- 진성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국제사법공조”, 섭외사건의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34집(1986).
- 黃進, 曾濤, “중국과 한국간 사법공조의 현황 및 미래”, 국제사법연구, 제15호(2009).

## 2. 외국문헌

Adeline Chong (Edit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Asia, Asian Business Law Institute, 2017.

“Bộ Tư pháp: Mỗi năm tiếp nhận hơn 4.000 yêu cầu về tương trợ tư pháp”, Báo điện tử Chính phủ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2020. 6. 23.), <http://baochinhphu.vn/Phap-luat/Bo-Tu-phap-Moi-nam-tiep-nhan-hon-4000-yeu-cau-ve-tuong-tro-tu-phap/398676.vgp>

“UBTVQH cho ý kiến về chương trình xây dựng luật, pháp lệnh”, Báo điện tử Chính phủ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2021. 6. 14.), <http://baochinhphu.vn/Hoat-dong-Bo-nganh/UBTVQH-cho-y-kien-ve-chuong-trinh-xay-dung-luat-phap-lenh/434689.vgp>

“Bộ Tư pháp đề xuất xây dựng Luật tương trợ tư pháp trong lĩnh vực dân sự”, Báo Lao Động(2019. 11. 15.), <https://laodong.vn/thoi-su/bo-tu-phap-de-xuat-xay-dung-luat-tuong-tro-tu-phap-trong-linh-vuc-dan-su-766254.ldo>

“Tương trợ tư pháp: “trống” nhiều quy định”, Báo Nhân Dân điện tử(2012. 8. 24.), <https://nhandan.vn/thoi-su-phap-luat/tuong-tro-tu-phap-trong-nhieu-quy-dinh-582497>

“Cần hoàn thiện khung pháp lý về tương trợ tư pháp hình sự”, Bảo vệ pháp luật (2019. 9. 10.), <https://baovephapluat.vn/kiem-sat-24h/ban-tin-kiem-sat/can-hoan-thien-khung-phap-ly-ve-tuong-tro-tu-phap-hinh-su-75405.html>

Bộ Tư pháp, “Hội nghị La Hay- cái nôi của nền tư pháp quốc tế: Việt Nam được c hình thức công nhận là quốc gia thành viên từ ngày”, Trang thông tin điện tử Tương trợ tư pháp (2013. 4. 10.), <https://www.toaan.gov.vn/webcenter/portal/tttp/chi-tiet-dieu-uoc?dDocName=TOAAN009865>

\_\_\_\_\_, Sổ tay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tương trợ tư pháp trong lĩnh vực dân sự tại Việt Nam, 2018. 1.

Chính phủ, Báo cáo số 429/BC-CP về hoạt động tương trợ tư pháp năm 2016, 2016. 10. 17.

\_\_\_\_\_, Báo cáo số 427/BC-CP về hoạt động tương trợ tư pháp năm 2017, 2017. 10. 12.

\_\_\_\_\_, Báo cáo số 465/BC-CP về hoạt động tương trợ tư pháp năm 2018, 2018. 10. 10.

- “Tương trợ Tư pháp trong Thi hành án dân sự: Vương mặc, bắt cập và đề xuất hướng giải quyết”,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Tổng cục Thi hành án dân sự – Bộ Tư pháp(2019. 12. 11.), [https://thads.moj.gov.vn/noidung/tintuc/lists/nghiencuutraodoi/view\\_detail.aspx?itemid=934](https://thads.moj.gov.vn/noidung/tintuc/lists/nghiencuutraodoi/view_detail.aspx?itemid=934)
- “Ủy ban Thường vụ Quốc hội cho ý kiến về việc gia nhập Công ước La Hay”,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Quốc Hội(2015. 10. 13.), <http://quochoi.vn/uybandoingoi/lapphap/Pages/home.aspx?ItemID=112>
- David McCl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ivil and Criminal Matters,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Việt Nam tham gia Công ước La Hay năm 1965 về Tổng đạt: Cơ hội và thách thức”, Đài Phát thanh – Truyền hình và Báo Bình Phước(2014. 12. 10.), <https://baobinhphuoc.com.vn/news/1/12582/viet-nam-tham-gia-cong-uoc-la-hay-nam-1965-ve-tong-dat-co-hoi-va-thach-thuc>
- Lê Mạnh Hùng, Đỗ Ngọc Thanh, “Công ước La Hay năm 1970 về thu thập chứng cứ ở nước ngoài trong lĩnh vực dân sự hoặc thương mại và khả năng Việt Nam gia nhập Công ước này”, Tạp chí Tòa án nhân dân điện tử(2018. 12. 9.), <https://tapchitoaan.vn/bai-viet/phap-luat/cong-uoc-la-hay-nam-1970-ve-thu-thap-chung-cu-o-nuoc-ngoai-trong-linh-vuc-dan-su-hoac-thuong-mai-va-kha-nang-viet-nam-gia-nhap-cong-uoc-nay>
- Lê Mạnh Hùng, “Công nhận và cho thi hành tại Việt Nam quyết định giải quyết việc phá sản của Tòa án nước ngoài – Một số vấn đề pháp lý đặt ra”, Tạp chí Tòa án nhân dân điện tử(2021. 3. 6.), <https://tapchitoaan.vn/bai-viet/nguyen-cuu/cong-nhan-va-cho-thi-hanh-tai-viet-nam-quyet-dinh-giai-quyet-viec-pha-san-cua-toa-an-nuoc-ngoai-%E2%80%93mot-so-van-de-phap-ly-dat-ra>
- Nguyễn Đức Dũng, “Xã hội hóa tổng đạt giấy tờ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theo công ước La Hay 1965 về Tổng đạt”, Ủy ban nhân dân tỉnh Bắc Ninh Văn phòng Thừa Phát Lại Kinh Bắc(2018. 8. 24.), <http://thuaphatlaikinhbac.vn/xa-hoi-hoa-tong-dat-giay-to-nuoc-ngoai-tai-viet-nam-theo-cong-uoc-lahay-1965-ve-tong-dat.html>
-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port on the Work of the Special Commission on the Operation of the Convention of 18 March 1970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1978. 6.

- \_\_\_\_\_, Report on the Work of the Special Commission of May 1985 on the Operation of the Convention, 1986. 9.
- \_\_\_\_\_, Report on the work of the Special Commission of April 1989 on the operation of the Hague Conventions of 15 November 1965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and of 18 March 1970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1989. 4.
- \_\_\_\_\_,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Special Commission on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Hague Apostille, Evidence and Service Conventions, 2003. 11.
- \_\_\_\_\_, Summary of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of July 2008 relating to the Service Convention, with Analytical Comments (Prel. Doc. No 14), 2009. 1.
- \_\_\_\_\_,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Special Commission on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Hague Apostille, Service, Taking of Evidence and Access to Justice Conventions, 2009. 2.
- \_\_\_\_\_,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2014 Special Commission on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Hague Service, Evidence and Access to Justice Conventions, 2014. 5.
- Phạm Hồ Hương, “Công ước La Hay về tổng đạt ra nước ngoài giấy tờ tư pháp và ngoài tư pháp trong lĩnh vực dân sự hoặc thương mại”, Trang thông tin Tương trợ tư pháp, <https://tttp.toaan.gov.vn/webcenter/portal/tttp/chi-tiet-dieu-u-uoc?dDocName=TOAAN009789>
- “Thu thập chứng cứ ở nước ngoài trong lĩnh vực dân sự, thương mại của Việt Nam”, Tạp chí Công Thương(2020. 7. 2.), <https://tapchicongthuong.vn/bai-viet/thu-thap-chung-cu-o-nuoc-ngoai-trong-linh-vuc-dan-su-thuong-mai-cua-viet-nam-73068.htm>
- “Việt Nam được công nhận là thành viên chính thức Hội nghị La Hay”, Thư Viện Pháp Luật(2013. 4. 15.), <https://thuvienphapluat.vn/tintuc/vn/thoi-su-phap-luat/quoc-te/4494/viet-nam-duoc-cong-nhan-la-thanh-vien-chinh-thuc-hoi-nghi-la-hay>
-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Việt Nam chính thức nộp Văn kiện gia nhập Công ước La Hay về Tổng đạt giấy tờ”, Trang thông tin điện tử Tương trợ tư pháp (2018. 7. 26.), <https://tttp.toaan.gov.vn/webcenter/portal/tttp/chi-tiet-tin?dDo>

cName=TOAAN009995

\_\_\_\_\_, Công văn 33/TANDTC-HTQT năm 2021 về công tác tương trợ tư pháp, tổng đạt văn bản tố tụng ra nước ngoài, 2021. 3. 17.

“Quy trình thực hiện tương trợ tư pháp về dân sự thực tiễn áp dụng và những bất cập”, Trường Đại học Kiểm sát Hà Nội, <https://tks.edu.vn/thong-tin-khoa-hoc/chi-tiet/81/560>

“Vietnam seeks to join Hague Service Convention next year”, Vietnam Law and Legal Forum magazine(2014. 10. 23.), <https://vietnamlawmagazine.vn/vietnam-seeks-to-join-hague-service-convention-next-year-3687.html>

### 3. 기타

e-나라지표 웹페이지, <https://www.index.go.kr>

JICA 웹페이지, <https://www.jica.go.jp>

KOTRA, 2021 국별 진출전략 - 베트남, 2021.

베트남 법무부 웹페이지, <https://moj.gov.vn>

헤이그회의 웹페이지, <https://www.hcch.net>

## 《국문초록》

‘국제민사사법공조’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문서를 외국에 송달하고 외국에서 증거조사를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국가 간의 협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을 포함한 대륙법계에서 문서송달과 증거조사는 주권의 행사이므로, 이는 다른 국가의 사법기관의 협력을 통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민사사법공조는 대체로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다. 대표적인 다자조약으로는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이하 “헤이그회의”)가 성안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1965. 11. 1. 협약」(이하 “송달협약”)과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1970. 3. 18. 협약」(이하 “증거협약”)이 있다.

우리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와 교역이 날로 증대되고, 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베 사법공조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베트남은 사법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당과 국가의 국제통합 정책에 따라, 2013년 헤이그회의 회원국이 되었고, 2016년 송달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20년 증거협약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베트남이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이제 양국 사이에는 국제민사사법공조를 위한 법적 기초가 구축되었다.

이 글은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체계에 관하여 설명한다. 구체적인 논의순서는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현황을 개관한다. III장에서는 베트남 국내법, 특히 「사법공조법」에 따른 민사사법공조 제도를 설명한다. IV장과 V장은 베트남 정부가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에 가입하면서 선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협약에 따른 베트남의 사법공조 제도를 검토한다.

베트남에서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지만, 양자조약과 다자조약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선후관계가 없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사법공조 실무상 양자조약의 우선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에 가입하면서 각기 다양한 조항을 유보하여 사법공조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였다. 향후에 양국은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VI장에서는 한베조약에 포함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제언한다.

주제어 : 국제민사사법공조,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송달협약, 증거협약,  
베트남 민사소송법, 베트남 사법공조법, 한베조약

《Abstract》

## Vietnam's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 with Focus on Hague Service Convention and Hague Evidence Convention

Choi, Changmin\*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refers to the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n order to serve documents across the border and to take evidence in other jurisdictions in relation to civil procedures. As service of documents and taking of evidence are the exercise of sovereignty in the civil law system countries, such as Korea and Vietnam, it must be don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judicial authorities of respective countries. Therefore,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has by and large been governed by treaties between states. The Convention of 15 November 1965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Service Convention”) and the Convention of 18 March 1970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Evidence Convention”) drafted by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 exemplify such multilateral treaties.

With the increase of investment and trade by Korean companies in Vietnam and economic and social intera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demand for judicial assistance between Korea and Vietnam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Korea and Vietnam had conducted working-level negotiations to sign a bilateral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but such effort did not bear fruit.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integration policy of the Party and the state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judicial field and to continuously sign treaties on legal

---

\* JIPYONG LLC, Attorney-at-law

assistance, Vietnam became a member state of the HCCH in 2013 and acceded to the Service Convention in 2016, and to the Evidence Convention in 2020. As Vietnam became the contracting state of the Service Convention and the Evidence Convention following Korea, the legal basis for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now been established.

This article explains the Vietnamese system of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The specific order of discussion is as follows. Chapter II overviews Vietnam's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In chapter III, the author describes the regulations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prescribed in the Vietnamese domestic laws, especially the Law on Judicial Assistance. Chapters IV and V review the Vietnamese judicial assistance system according to the Service Convention and the Evidence Convention, focusing on the declarations made by the Vietnamese government upon acceding to each Convention.

In Vietnam, treaties take precedence over domestic laws, but there is no priority between bilateral treaties and multilateral treaties. However, the Vietnamese government recommends applying bilateral treaties first in the practice of judicial assistance. As Korea and Vietnam each made the reservations to multiple provisions while acceding to the Service Agreement and the Evidence Agreement, the scope of judicial assistance was considerably diminished. In the future, the two countries need to ease these restrictions by signing a bilateral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In Chapter VI, the author suggests key features to be included in the potential Korea-Vietnam treaty.

**Key words** :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Service Convention, Evidence Convention, Civil Procedure Code of Vietnam, Law on Judicial Assistance of Vietnam, Korea-Vietnam Treaty

